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김정곤 · 이효진 · 강반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4-03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24년 12월 26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가 7,000원
ISBN 978-89-322-7128-6 94320
978-89-322-7092-0 (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국문요약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의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

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

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페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 |
|--|-----------|
| 국문요약 | 3 |
| 제1장 서론 | 11 |
| 1. 연구 배경 | 12 |
|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 15 |
| 가.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 15 |
| 나. 차별성 | 17 |
|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 19 |
|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 20 |
|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 23 |
| 가. 기본방향: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 23 |
| 나. 디지털 ID 프로그램과 솔루션 개발 | 26 |
| 3. 데이터 규범 | 29 |
| 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 29 |
| 나.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 | 32 |
| 다.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 | 36 |
| 라. 디지털 인디아법(안) | 40 |
| 4. 평가와 시사점 | 43 |
| 가.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 43 |
| 나. 데이터 규범 | 44 |
|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 49 |
|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 50 |
|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 52 |
| 가. WTO | 52 |
| 나. 미국 | 54 |
| 다. EU | 57 |
| 라. 호주 | 59 |
| 마. 중국 | 62 |

| | |
|--------------------------------------|------------|
|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 64 |
| 가. G20 | 64 |
| 나. 국제기구 및 양자 간 협력 | 67 |
|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 71 |
| 가. 인디아 스택 활용 | 71 |
| 나. 데이터 현지화 요건 대응 | 74 |
| 다. 전자적 전송의 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한 대응 | 77 |
| 라. 데이터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 | 79 |
| 5. 평가와 시사점 | 83 |
| 가.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 83 |
| 나.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 85 |
| 다. 기업 진출 사례 | 86 |
|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 89 |
|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 90 |
| 가. 데이터 규범 현안 | 90 |
| 나. 통상협력 | 91 |
| 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협력 | 93 |
| 라. 공공 부문 디지털화 협력 | 94 |
| 마.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부 간 교류 | 95 |
| 바. 기업 진출 지원 | 97 |
|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 98 |
| 참고문헌 | 100 |
| 부록 | 120 |
| Executive Summary | 126 |

표 차례

| | |
|---|----|
| 표 1-1. 주요국의 규제적 데이터 정책(2024년 8월 현재) | 14 |
| 표 2-1. 인도와 EU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46 |
| 표 2-2. 인도 데이터 규범의 주요 내용과 현안 | 48 |
| 표 3-1.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66 |
| 표 3-2. 국가 및 권역별 인도의 DPI 협력 현황 | 69 |
| 표 3-3. 레이어별 해외 기업의 인디아 스택 활용 사례 | 72 |
| 표 3-4. MasterCard의 인도 데이터 현지화 규제 주요 대응 조치 | 75 |
| 표 3-5. AWS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운영 및 규제 준수 현황 | 77 |
| 표 3-6. 인도와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논의와 현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 85 |

부록 표 차례

| | |
|---|-----|
| 부록 표 1. 인도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분야 GATS 양허 (specific commitment) | 120 |
| 부록 표 2. 인도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챕터 | 122 |
| 부록 표 3. 호주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챕터 | 124 |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인도의 분야별 디지털 정책 | 13 |
| 그림 2-1.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의 영향요인 | 23 |
| 그림 2-2. 인도의 정부 주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 25 |
| 그림 2-3. 인디아 스택의 구성요소 | 27 |
| 그림 2-4. DEPA 솔루션 구조 | 29 |
| 그림 2-5. 디지털 인디아법(안) 개요 |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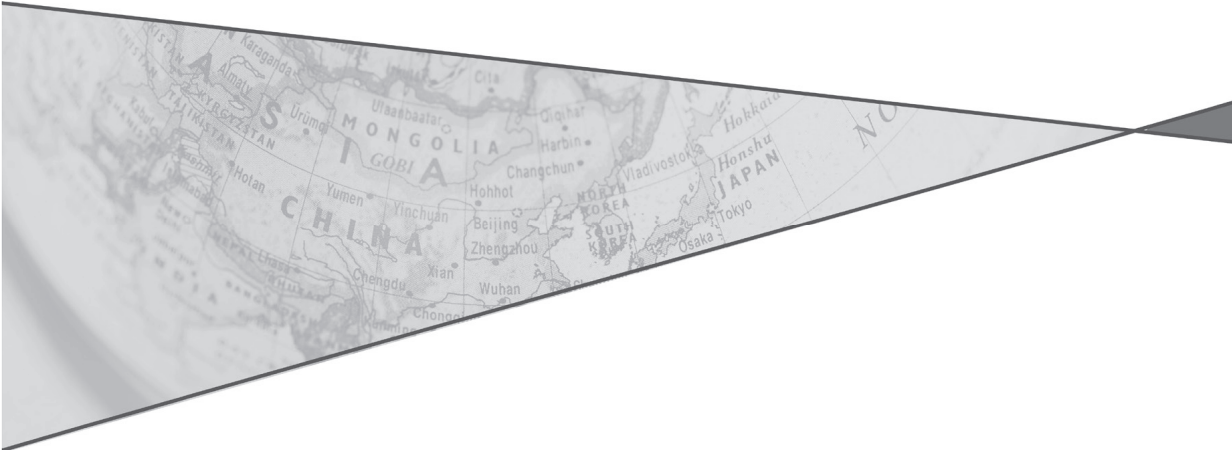
■ 글상자 차례

| | |
|-----------------------------|----|
| 글상자 3-1. EU의 디지털 통상정책 | 58 |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1. 연구 배경

인도는 새로운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성장(온라인 영상물 구독자 수 세계 3위),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기기 및 사물인터넷 부문의 연결성(세계 2위), 디지털 결제 확산,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세계 3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다.¹⁾ 인도는 또한 주요 디지털 무역 국가로서,²⁾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던 과거부터 대규모 IT 아웃소싱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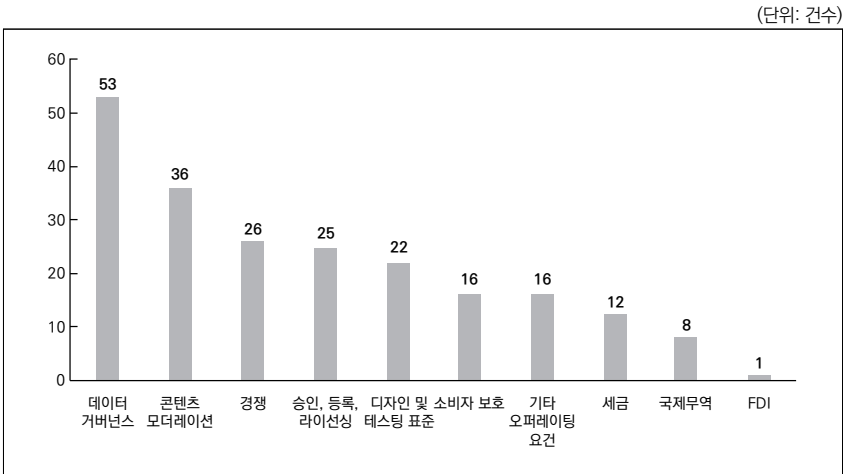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자국 시장의 급성장 등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법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현재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인도의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53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약 25%를 차지한다(2024년 8월 기준).³⁾

1) Omdia, "FT Omdia Digital Economies Index 2022-26"(검색일: 2024. 9. 12.); 김경훈 외(2023), p. 68에서 재인용.

2) 인도의 2022년 기준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 수출은 2020년 767억 달러, 수입은 291억 달러, 무역수지는 477억 달러로 세계 6위이며,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에 한정할 경우 세계 2위 수출국이다. 여기에 상업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인도의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OECD, "Going Digital Toolkit. 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as a share of commercial services trade"(검색일: 2024. 9. 11.); 김경훈 외(2023), pp. 76-77에서 재인용.

3) St. Gallen Endowment for Prosperity through Trade(검색일: 2024. 8. 29.).

그림 1-1. 인도의 분야별 디지털 정책



자료: St. Gallen Endowment for Prosperity through Trade(검색일: 2024. 8. 29.).

제2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인도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Digital India Initiative)의 출범과 더불어 디지털 ID 프로그램 아드하르(Adhaar)와 포괄적인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솔루션인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을 실행하여 데이터 축적 및 활용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진전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Draft National Data Governance Policy)을 발표했다. 인도는 데이터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주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진했던 데이터 규범 수립에 박차를 가해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을 발효시켰으며, 2020년에는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Non-Pers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을 발표하는 한편, 2023년에는 디지털 경제의 가장 상위 법제라고 할 수 있는 기존 「IT 법(IT Act 2000)」을 대체하는 「디지털 인디아법안(Digital India Act 2023)」을 공개했다.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EUI의 DTI(Digital Trade Indicators) 지표에 따르면(2024년 8월 기준), 국경 간 데이터 정책 및 국내 데이터 정책 측면에서 인도는 제한적인 규제의 수가 각각 9개, 10개로, 튀르키예 및 중국과 더불어 가장 많다. 국경 간 데이터 규제 정책 가운데는 현지 데이터 저장 요건(3), 데이터 이전 금지 및 현지 처리 요건(4), 조건부 데이터 이동 레짐(1),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협정 미참여(1)가 포함된다. 국내 데이터 정책 가운데는 최소 데이터 보유 기간(4), 정부의 데이터 접근권한(4), 영향평가 요건 또는 데이터 보호 담당자 임명 요건(1)이 제한적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인도는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의 비중이 24.7%로 높은 편이다.

표 1-1. 주요국의 규제적 데이터 정책(2024년 8월 현재)

| 국가 | 국경 간 데이터 정책 | 국내 데이터 정책 | 비중(A+B, %) |
|-------|-------------|-----------|------------|
| | 건수(A) | 건수(B) | |
| 튀르키예 | 12 | 6 | 26.1 |
| 중국 | 11 | 13 | 19.5 |
| 인도 | 9 | 10 | 24.7 |
| 인도네시아 | 9 | 6 | 22.1 |
| 한국 | 8 | 4 | 25.0 |
| 독일 | 3 | 2 | 23.8 |
| 일본 | 3 | 2 | 14.7 |
| 미국 | 2 | 7 | 28.1 |
| 영국 | 2 | 3 | 21.7 |
| 싱가포르 | 1 | 3 | 25.0 |
| 아일랜드 | 0 | 2 | 16.7 |

주: 비중은 데이터 정책(A+B)이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적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 밖의 디지털 무역 제한적 정책은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콘텐츠 접근, FDI, 지적권, 중개자 책임, 온라인 판매 및 거래, 공공조달, 양적 무역 제한, 관세 및 무역 방어 조치, 기술표준, 통신 인프라 및 경쟁 관련 정책을 포함한다.

자료: EUI, "Digital Trade Integration Project"(검색일: 2024. 8. 29.).

급성장하는 인도의 디지털 시장을 겨냥한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인도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분야에서 인도 진출 및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검색 엔진, SNS,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한 전자산업(전기차, 휴대폰, 백색가전 등)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화장품 등 소비재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영화 및 드라마, 게임, 음악),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인도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규제 여건에 대응한 주요국과 기업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이상의 배경하에서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의 디지털 통상정책, 그리고 주요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분석하여 한·인도 정부 간 논의 여젠다 수립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규범을 분석한다. 먼저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여건과 영향요인을 일람하며, 이어서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와 인도의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Niti Aayog의 Strategy for New India를 중심으로 인도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거버

년스 정책과,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체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데이터 규범, 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개인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 그리고 기존 IT 법을 대체하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의 데이터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범도 식별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도와 주요국 간의 통상정책 논의를 분석한다. 특히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주요국이 제기하는 인도의 데이터 무역장벽과 통상협정 등 정부 간 어젠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부문에서 인도의 대외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끝으로 현재 인도의 제도적 환경하에서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제 여건 활용 및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인도와 논의할 수 있는 데이터 현안과 협력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통상협정과 같은 정부 간 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되, 비교적 단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현안 및 협력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주로 인도의 데이터 관련 각종 정책 및 법(안)과 관련 분석자료를 토대로 수행했다. 즉 데이터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의 정책과 법을 식별하고, 법조문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 인도의 데이터 통상협정, 정책문건, 보도자료 등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국내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대외협력과 데이터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사례 부분에 반영하였다.

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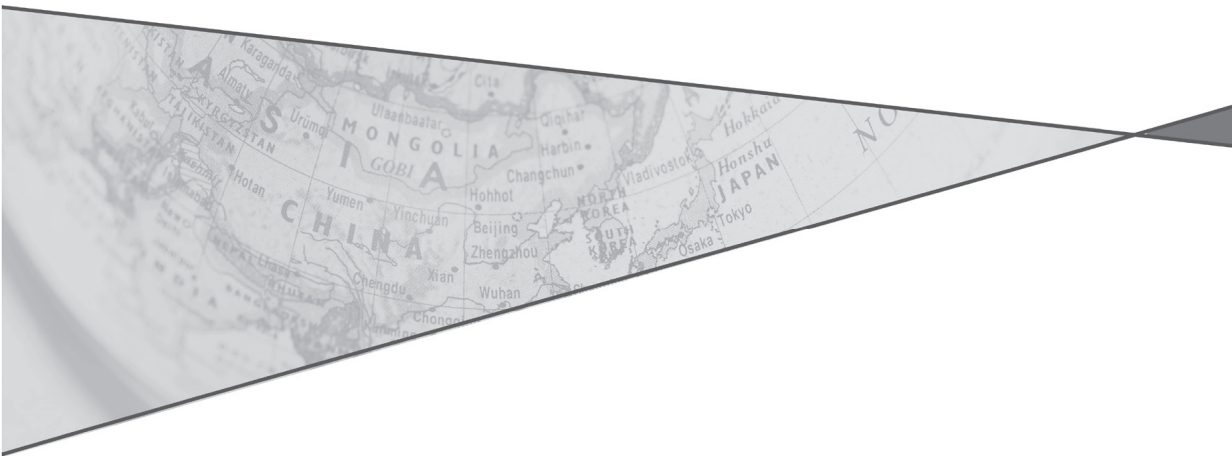
디지털 인디아를 비롯한 인도의 디지털 경제 정책 및 규범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가 소수 존재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는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의 최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 등을 분석하며, 인디아 스택이 국가 주도의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갖는 의미를 제시했다.

데이터 규범의 경우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김경훈 외(2023) 등에서 이미 분석한 바 있으나, 본고에는 여기서 확장된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기존 「IT 법」을 대체하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도와 주요국 간 통상협력의 현안, DPI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대외협력, 그리고 인도의 제도 환경하에서 기업의 대응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했다.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추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포괄범위가 넓으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본 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측면), 그리고 이것의 실제 실행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앞서서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의 고려사항과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도입은 비교적 최근어야 시작되었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특유의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구축되고 있다. 2017년 개인정보보호권에 대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KS 푸타스와미 외 대인도 정부 사건(KS Puttaswamy and Anr v Union of India and Ors 2017)'은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더불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데이터 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⁴⁾ 이렇게 출범한 스리크리슈나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under the Chairmanship of Justice B N Srikrishna)는 2018년 7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경제(A Free and Fair Digital Economy: Protecting Privacy, Empowering Indians)』라는 제목의 보고서와⁵⁾ 더불어,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전자정보기술부에 제출했다. 또한 2019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소속 DPIIT(Department for

4) "Justice BN Srikrishna To Head Committee For Data Protection Framework"(2017. 8. 1.)(검색일: 2024. 8. 29.).

5) Srikrishna Committee(2018), *A Free and Fair Digital Economy: Protecting Privacy, Empowering Indians*.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 초안(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을 발표했다.⁶⁾

이상의 과정은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도입과 더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아드하르 도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스크리슈나 위원회 구성을 비판하였으며,⁷⁾ 이러한 가운데 기본권의 하나로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국내 정치적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흐름은 시장 보호 및 자국 기업 육성 의지이다. 인도의 검색 엔진 월별 점유율(사용률)은 구글이 평균 98.2% (2023. 7.~2024. 7.)로 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⁸⁾ 전자상거래의 경우 2022년 기준 월마트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플립카트가 38%, 아마존이 35%, 인도 기업인 민트라(Myntra)가 8%, 여타 자국 중소 플랫폼이 19%를 차지하고 있다.⁹⁾ OTT 영상물의 경우 2023년 기준 넷플릭스(6%), 유튜브(6%),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9%)와 같은 거대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Jio TV(12%) 등 인도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¹⁰⁾ 이처럼 인도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지배력이 높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OTT 등 플랫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릴라이언스가 소유한 Jio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결제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릴라이언스 인터스트리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는 ‘데이터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데이터 현지화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¹¹⁾

6)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훈 외(2023) 참고.

7) “Over 150 Activists And Experts Write To Srikrishna Committee; Demand Transparency”(2018. 7. 20.)(검색일: 2024. 8. 29.).

8) PwC India(2023), “India phygital index 2023.”

9) *Ibid.*, p. 23.

10) Statista, “OTT Video – India”(검색일: 2024. 8. 29.).

11) “Mukesh Ambani Says ‘Data Colonisation’ As Bad As Physical Colonisation”(2018. 12. 19.).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에서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 수립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채택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23)」 수립 과정 등 정책 및 법제도 도입 과정에서 인도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등 제한적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¹²⁾ 동 법이 초안에 비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와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기업협회(NASSCOM: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등은 스타트업에 대한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인도 혁신 생태계의 성장 저해를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¹³⁾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정부의 역할이다. 인도 정부는 기업과 더불어 정부가 데이터 축적의 주된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7월 발표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보고서는 데이터의 집합이 익명화되면 이를 ‘공공재’라고 지칭하고, 정부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¹⁴⁾ 이는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의 독자적인 지점이다. 디지털 전환이 뒤쳐진 인도에서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재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적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정부 주도의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¹⁵⁾

(검색일: 2024.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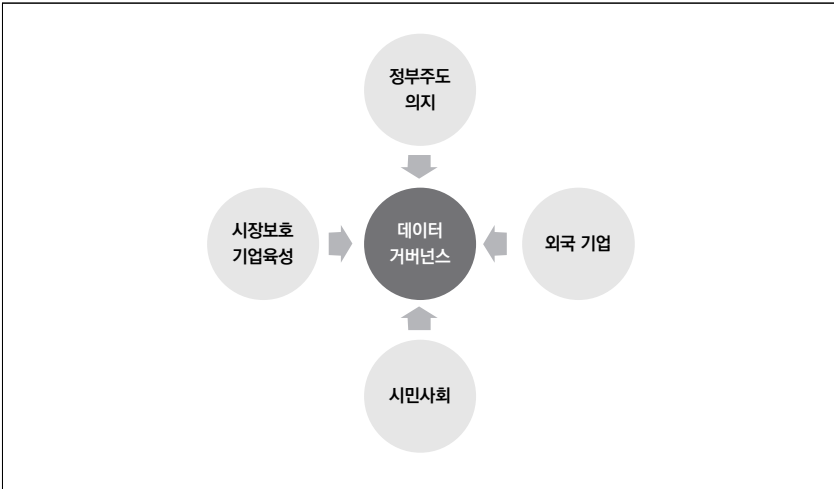
12)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고.

13) Sinha and Basu(2019), p. 9.

14) Ministry of Finance(2019), p. 78, p. 81.

15) Mishra(2023), p. 255.

그림 2-1.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의 영향요인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가. 기본방향: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인도를 디지털 기반의 지식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디지털 인디아’를 추진하고 있다.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과거의 ‘오프라인, 현금 중심, 비공식, 낮은 생산성’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기반의, 현금이 없는, 공식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디아’ 추진은 국내적으로는 실명을 사용한 공식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거래, 신용 평가, 세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¹⁶⁾

16) 인도인의 86% 이상(2016년 기준)이 현금 거래에 의존하면서 현금 기반의 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는 위조 지폐, 비정상적인 거래 등으로 인한 혼란이 존재했다. 모디 총리는 2016년 11월,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관련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였다[“Cash rules in India

2015년 7월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의 Bharat Broadband Network Limited(BBNL)¹⁷⁾가 관리하고 있으며, △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공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수요 기반의 데이터 디지털화, △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가 주요 추진 과제이다. 2018년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New India(Niti Aayog)’에서도 ‘데이터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 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인도 정부는 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비민감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⁹⁾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방정부 간의 상이한 데이터 수집 및 통합 등이 주된 걸림돌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 정부 부문의 데이터 효율성 개선, △ 데이터 센터 확장, △ 데이터 이용자 편의 향상, △ 데이터 통합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정부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한다.²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 질 높은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보호, △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의사 결정, △ 데이터 기술 발전 등을 목표로 한다.

despite digital payment boom”(2023.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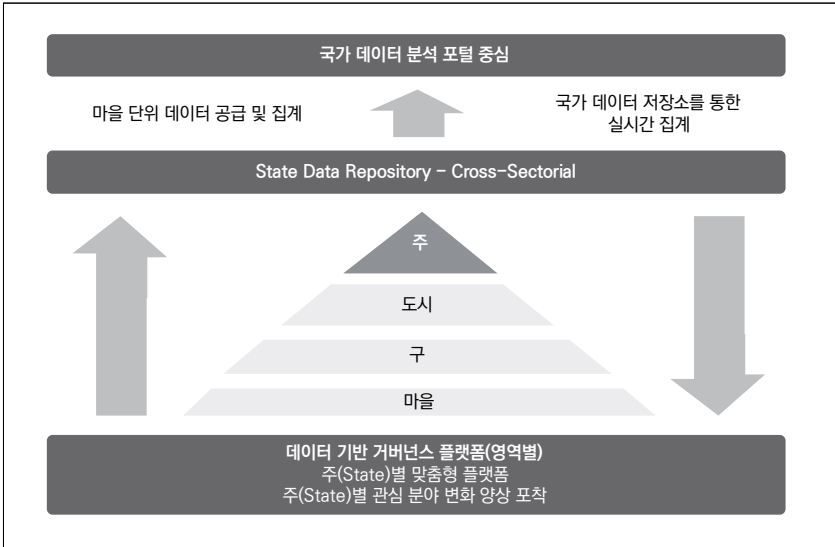
17) BBNL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15.) 참고.

18) Niti Aayog, Strategy for New India@75(검색일: 2024. 10. 15.).

19) *Ibid.*

20) *Ibid.*

그림 2-2. 인도의 정부 주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자료: Niti Aayog, Strategy for New India@75(검색일: 2024. 10. 15.).

인도 정부는 2022년에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National Data Governance Policy(draft))’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의지를 표명하였다. 해당 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정책(안)은 강력한 디지털 정부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데이터 중심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안)은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통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익명 기반의, 비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재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라트넷, 메이크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 물류 및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의 정부 역점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이 관리하는 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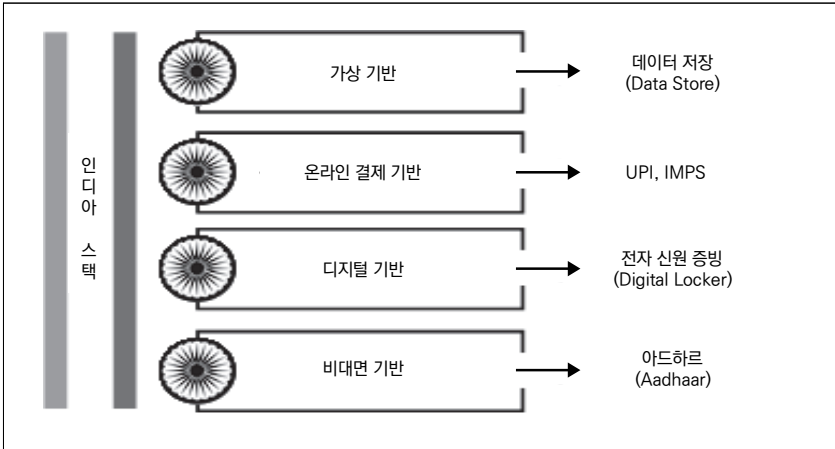
랫폼에도 적용되며, 현재 수집되어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관련 표준과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다. 디지털인디아협회(DIC) 산하에 ‘인도 데이터 관리 사무소(IDMO: India Data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해 정책 실행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며, 데이터 보안 표준에 근거하여 수집된 비개인 데이터는 익명화되어 연구,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 데이터 관리 사무소가 전담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 및 규칙을 마련하고, △ 데이터 저장 및 보존, △ 정부 간 데이터 접근, △ 인도 데이터 프로그램,²¹⁾ △ 데이터 익명화, △ 데이터 품질 및 메타 데이터 표준, △ 데이터 접근 플랫폼 설계, △ 데이터 접근 및 가용성, △ 이용 권한 및 공개 기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나. 디지털 ID 프로그램과 솔루션 개발

인도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기반, 온라인 결제 기반, 가상 기반(Faceless, Paperless, Cashless, Presenceless)’의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을 제시했다. 인디아 스택은 개방형 API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전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인디아 스택은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데이터 축적,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 전자 신원 증빙, 가상 기반 신원 확인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지칭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의 핵심이다. 인디아 스택은 그동안 인도 정부가 추진해온 △ 모바일 연결성 제고, △ 공공의 인터넷 접근성 제고, △ 광대역 구축, △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한 전자제품 생산력 확대, △ 오픈 데이터 확산에 힘입고 있다.

21)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비개인적이고 익명화된 데이터 세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

그림 2-3. 인디아 스택의 구성요소



자료: IndiaStack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15.).

인디아 스택은 정부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신원 확인 프로그램인 아드하르(Aadhaar)는 인디아 스택의 핵심 토대이다. 아드하르는 모디 정권 이전인 맘모한 싱 정권 시기인 2009년에 도입되어 2010년에 최초 발급되었다. 아드하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얼굴 사진 등과 손가락 지문, 홍채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12자리의 고유번호로 2024년 10월 기준 아드하르 시스템에 등록된 인도인은 13억 명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의 약 95%가 아드하르 고유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²²⁾ 아드하르 도입 이전에는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신분 증명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신분 증명의 부재는 은행, 보험, 정부 보조금 등 금융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아드하르 도입 이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64%가 금융 서비스를 위해 아드하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이러한 측면에서 아드하르의 보급은 인도 내 신원 증명 문제를 해결하여 소외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

22) IndiaStack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15.).

23) World Bank(2017), p. 21.

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인도 사회가 디지털 기반(Paperless)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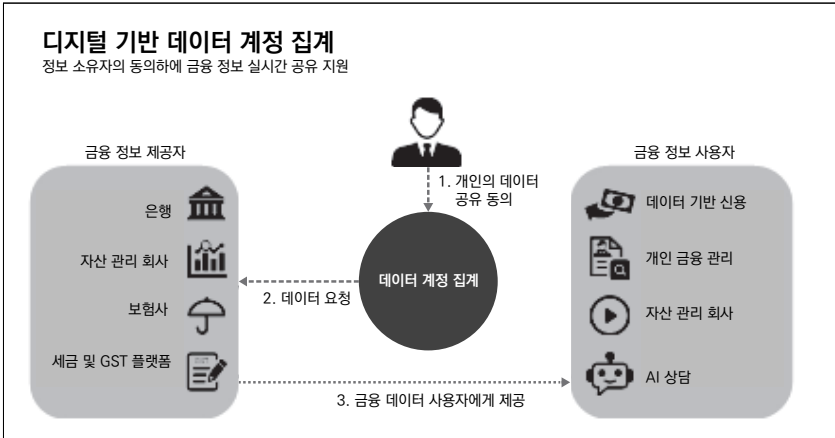
아드하르를 통한 신분 확인이 용이해짐에 따라 2012년 e-KYC를 출시하여 금융권의 1인당 신원 확인 비용을 약 23달러에서 0.15달러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아드하르 보유자의 개인 데이터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든 정부 및 기관 제출 서류,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Sign을 출시(2015년)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현재까지 670건의 디지털 신원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전자문서 시스템인 디지로커(DigiLocker)를 도입하고 운전면허증, 학위, 계약서 등 중요 문서의 보안상 문제를 최소화하여 2024년 10월까지 총 1,460개 기관이 문서 발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 안정성 검증 후 2016년 인도 국가결제 공사(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는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인 UPI를 출시하여 인도를 디지털 결제의 시대로 이끌었다. UPI는 인도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현재 Visa, Alipay, WeChat Pay, MasterCard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지불결제 시스템으로 부상하였다.²⁴⁾

DEPA(Data Empowerment and Protection Architecture)는 인디아 스택의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한 동의 기반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소유자가 표준화된 전자 동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DEPA 안에서 ‘동의 관리자’를 통해서 데이터 소유자는 본인의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 요청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금융 서비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의료, 전자상거래 등 동의 기반 데이터 공유가 활용되는 여타 부문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24) IndiaStack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15.).

그림 2-4. DEPA 솔루션 구조



자료: IndiaStack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15.).

3. 데이터 규범

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²⁵⁾

인도 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후,²⁶⁾ 인도 정부는 다양한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에 인도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인 「디지털 개인데이터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23)」을 도입했다. 최종 발효된 법은 2023년 발효 이전에 논의된 법안들에 비해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개인데이터보호법」은 디지털화된(digitised) 인도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된다.²⁷⁾ 이전에 논의된 법안이 오프라인 개인 데이터 등을 포함했던 것과는 달리, 적용 범위를 디지털 개인 데이터로 한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25) 본절은 김경훈 외(2023), pp. 85~89를 대폭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6) Supreme Court of India(2017).

27) Government of India(2023a), chapter I, article 3.

한편 지리적 적용 범위는 인도 국내는 물론, 해당 데이터 처리가 인도에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국외에도 해당된다.²⁸⁾

데이터 수집 및 처리는 데이터 주체(data principal)의 동의(consent)에 근거하거나, 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사용 기준²⁹⁾에 따라야 한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의 세부 내용과 처리 목적이 통지되어야 하며,³⁰⁾ 동의는 어느 시점에서든 철회될 수 있다.³¹⁾ 이 법이 규정하는 동의는 “자유의사에 따르고, 구체적이며, 정보를 충실히 받고, 조건이 부가되지 않고,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한다(free, specific, informed, unconditional and unambiguous).”³²⁾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a) 특정 목적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b) 국가 및 그 산하 기관이 규정된 보조금, 혜택, 서비스, 증명서, 면허 또는 허가를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하거나 발급하는 경우,³³⁾ c)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그 기관의 기능 수행 또는 인도의 주권 및 무결성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 d)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e) 판결이나 법령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f) 의료적 응급상황, g) 전염병, 질병 발생 또는 기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³⁴⁾ 동의 이외에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legitimate interest)에 대한 규정은 없다.

28) *Ibid.*, chapter I, article 3.

29) 합법적인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b) 개인이 이전에 국가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한 경우, 국가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조금, 혜택, 서비스, 면허, 증명서 또는 허가를 제공하는 경우, (c) 주권 또는 안보, (d) 국가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이행, (e) 판결, 법령 또는 명령 준수, (f) 의료 응급 상황 또는 생명 위협, 전염병 또는 공중 보건 위협, (g) 재난 또는 공공 질서 붕괴 시. *Ibid.*, Section 7.

30) *Ibid.*, chapter II, article 5.

31) *Ibid.*, chapter II, article 6.

32) *Ibid.*, chapter II, article 6.

33)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데이터 주체가 이전에(previously) 보조금, 혜택, 서비스, 증명서, 면허 또는 허가를 위해 국가 또는 그 기관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경우; 또는 (ii) 해당 개인 데이터가 국가 또는 산하 기관이 관리하고 중앙정부가 통지한 데이터베이스, 등록부, 장부 또는 기타 문서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거나 비디지털 형태로 제공된 이후 디지털화된 경우. *Ibid.*, chapter II, article 7.

34) *Ibid.*, chapter II, article 7.

데이터 수탁자(data fiduciaries)³⁵⁾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② 데이터 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③ 인도의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와 침해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④ 목적이 충족되는 즉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데이터 저장 제한). 다만 정부의 경우 저장 제한 및 데이터 주체의 삭제 요청 권한을 적용받지 않는다.³⁶⁾

또한 중요 데이터 수탁자(SDF: Significant Data Fiduciaries)로 불리는 추가 범주의 데이터 수탁자가 있다. 정부는 데이터의 양과 민감성, 데이터 보호 권리, 주권 및 무결성, 선거 민주주의, 보안 및 공공 질서에 대한 위협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 수탁자를 SDF로 지정할 수 있으며, SDF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DPIA를 수행하고, 위험 완화 조치를 배포하는 상주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임명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³⁷⁾

데이터 수탁자는 데이터 침해 발생 시 데이터보호위원회(및 영향을 받는 개인)에 신고해야 한다.³⁸⁾ 다만 데이터 침해 신고에 대한 위험 임계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침해 규모나 피해 위험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 침해를 데이터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채택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데이터의 역외 이전 부분이다. 이전에 논의된 법안들이 데이터 자국화(data localisation)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을 포함했던 데 반해, 채택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이외에는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방식을 채택했다.³⁹⁾ 다만 현지화 요건을 가지고

35)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6) Government of India(2023a), chapter II, article 8.

37) *Ibid.*, Section 10.

38) *Ibid.*, chapter II, article 8.

39) *Ibid.*, chapter IV, article 16.

있거나 부과할 수 있는 부문별 기관이 취하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부문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

이 법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데이터보호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① 법 준수 모니터링 및 벌칙 부과, ② 데이터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데이터 수탁기관에 지시, ③ 영향을 받는 자들의 불만 사항을 심리하는 일을 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 위원회는 규정이나 행동 강령을 제정하거나 기업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⁴⁰⁾

동 법 위반 시 벌금 규모는 어린이에 대한 의무 미이행에 대해 최대 20억 루피(한화 약 320억 원), 데이터 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5억 루피(한화 약 400억 원) 등으로 책정되었으며, 데이터보호위원회가 조사 이후 벌금을 부과한다.⁴¹⁾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존 재판소인 통신 분쟁 해결 및 항소 재판소(TDSAT)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금전적 처벌 외에도 데이터 수탁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한 형태로서 위원회에 자발적 약속(undertakings)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²⁾

나.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

상기한 바와 같이 「디지털 개인데이터보호법」은 다른 법률이 국외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조건을 부과할 경우, 이것이 동 법을 우선한다. 본 절에서는 인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일별한다. 여기에는 법제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권고사항도 포함하였다. 현재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공공 데이터, 금융 분야 및 금융·회계 데이터, 방송·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40) *Ibid.*, chapter V.

41) *Ibid.*, the schedule.

42) *Ibid.*, Section 32.

1) 공공 데이터

- ① 공공 기록물법(Public Records Act): 모든 '공공 기록'의 인도 외 지역으로의 전송을 금지한다.⁴³⁾
- ② 국가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정책(National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Policy): 모든 정부 관련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되, 민감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의 '합법적이고 등록된 사용'을 위한 공유를 허용한다.⁴⁴⁾
- ③ MeghRaj Initiative(메그라지 이니셔티브: 인도 정부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데이터 저장 관행에 대한 이니셔티브): 모든 공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센터 시설과 물리적 및 가상 하드웨어'를 인도에만 저장해야 한다.⁴⁵⁾

2) 금융 부문

- ④ 인도중앙은행(RBI)의 2018년 지불 시스템 데이터 저장에 대한 회람(2018 Circular on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 지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인도 내에서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에는 고객 데이터, 지불에 민감한 정보 및 거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단 인도 국외에 구성 요소가 있는 거래의 경우 필요시 관련 데이터를 외국에 저장할 수 있다.⁴⁶⁾
- ⑤ RBI의 NBFC에 의한 금융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2017년 지침(2017 Directions on Outsourcing of Financial Services by NBFCs): 금융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된 모든 원본 기록을 인도에 보관해야 한

43) Government of India(1993).

44)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2012).

45)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검색일:2024. 11. 14.).

46) RBI(2018a), "2018 Circular on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검색일: 2024. 11. 14.).

다고 명시한다. 또한 해외 소재 규제기관은 NBFC의 인도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⁴⁷⁾

⑥ IRDAI (보험 기록 유지) 규정 2015(IRDAI (Maintenance of Insurance Records) Regulations, 2015): 인도에서 이루어진 정책, 청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기록을 인도에 위치하여 유지 관리되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도록 보험사에 요구한다.⁴⁸⁾

⑦ 2017년 IRDAI(인도 보험사의 활동 아웃소싱) 규정(IRDAI (Outsourcing of Activities by Indian Insurers) Regulations, 2017): 모든 원본 보험자 기록을 인도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⁴⁹⁾

⑧ SEBI 규제 대상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doption of Cloud Services by SEBI Regulated Entities): 규제 대상기관에 관한 로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인도의 법적 경계 내에서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외 투자자의 경우 원본 데이터, 거래 및 로그는 인도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⁰⁾

⑨ SaaS 기반 솔루션에 대한 SEBI의 권고사항(Advisory regarding SaaS based solutions): 상업은행, 신용평가기관, STP 서비스 제공자 등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데이터, 시장 위험 데이터, 시스템 정보, 공급업체 정보, 시스템 구성 데이터, 감사/내부 감사 데이터, 네트워크 지형 및 설계를 포함한 중요한 데이터를 인도 내에 저장하도록 한다.⁵¹⁾

47) RBI(2017).

48) IRDAI(2015).

49) IRDAI(2017).

50) SEBI(2023).

51) SEBI(2020).

3) 금융·회계 데이터

- ⑩ 전자정보기술부의 사이버보안 지침 2022(Cybersecurity Directions 2022): 인도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도 내 금융 거래의 로그와 기록을 활성화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⁵²⁾
- ⑪ 2013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128조: 모든 회사는 등록된 사무소에서 회계장부, 기타 관련 장부 및 서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2022년 8월 5일 개정에 따르면 전자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기록은 인도에서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한다.⁵³⁾
- ⑫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통합 라이선스에 대한 라이선스 협정(License Agreement for Unified License): 라이선스 취득자가 가입자와 관련된 회계 정보 및 사용자 정보를 인도 외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한다.⁵⁴⁾

4) 방송·통신 부문

- ⑬ 통신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통합 액세스 라이선스 2004(Unified Access License for Telecom Service Providers 2004): 구독자 정보의 국내 저장 및 처리를 의무화한다. 구독자와 관련된 회계 정보 및 사용자 정보의 전송을 금지한다.⁵⁵⁾
- ⑭ 국가 통신 M2M(Machine-to-Machine) 로드맵(National Telecom M2M Roadmap 2015): 인도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M2M 게이트웨이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인도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⁶⁾

52)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22).

53) Government of india(2013).

54)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2023a).

55) 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India(2004).

56)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2015).

⑮ 2017년 FDI 정책(FDI Policy 2017): 방송 부문의 모든 FDI 유치 법인은 가입자 데이터의 현지 저장 및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 데이터를 인도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⁵⁷⁾

5) 민감 데이터/소비자 데이터

⑯ 2000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in 2000), 2011년 정보기술(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Rules, 2011): 국외 소재 법인에 의한 민감 개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한다(상대방이 정보기술 규칙이 규정한 데이터 보호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⁵⁸⁾

⑰ 2021년 소비자 보호(직접 판매) 규정(Consumer Protection (Direct Selling) Rules, 2021)의 규칙 5: 직접 판매 사업체는 인도 영토 내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⁵⁹⁾

다.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의 규율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EU의 비개인 데이터 정책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즉 비개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확산한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주된 목표이다. 이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57)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2017).

58)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00, 2011).

59) Ministry of Consumer Affairs(2021).

60) EU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참고.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Non-pers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은 당시 인도 정부가 도입 중이었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초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주권 의식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원칙과 규율이 포함되어 있다. 즉 비개인 데이터는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이 인도 정부의 시각이며, 인도에서 산출되는 광대한 데이터가 인도인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⁶¹⁾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경우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외 이전이 금지되며, 정부 관련 데이터는 국경 내에서 ‘합법적이고 등록된 사용’을 위한 공유가 허용된다.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2020년 7월 전문가 위원회의 명의로 2020년 7월에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위원회는 비개인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① 비개인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하고, ② 이러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⁶²⁾

이 보고서는 ‘비개인 데이터’에 대해 ‘개인 데이터가 아닌 모든 데이터(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신원의 특성, 특징 또는 속성 관련 데이터)’이며, 출처 측면에서 비개인 데이터는 ‘자연인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예: 날씨 또는 공급망에 관한 데이터), 또는 원래는 개인 데이터였으나 익명화된 데이터(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함)’라고 정의한다.⁶³⁾

비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① 공공 비개인 데이터: 정부가 공

61) "Centre to develop non-personal data collection platform for India Inc"(2024. 3. 12.)(검색일: 2024. 10. 10.).

62)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Government of India)(2020), pp. 8-10.

63) *Ibid.*, p. 13.

적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한 데이터로서, 예컨대 토지 기록이나 차량 등록의 익명화된 데이터는 공공 비개인 데이터로 간주된다. ② 커뮤니티 비개인 데이터: 자연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원시 데이터 또는 사실 데이터(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전력 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 세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③ 사적 비개인 데이터: 사기업이 사적 소유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하거나 생성한 데이터(파생된 인사이트, 알고리즘 또는 독점적 지식)를 의미한다.⁶⁴⁾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비개인 데이터에 민감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위원회 보고서는 익명 처리된 개인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① 재식별의 위험이 있는 민감 개인정보(예: 건강, 계급 또는 부족)에서 파생된 비개인 데이터, ②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 위험이 있는 데이터, ③ 국가 안보 또는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데이터 등 특정 범주의 데이터를 민감 데이터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⁶⁵⁾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하에서 데이터 주체(data principal)는 개인, 커뮤니티 또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데이터 관리자(data custodian)는 데이터 주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해야 한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수탁자(data trustee)라고 불리는 대표 주체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국민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수탁자는 데이터 관리자가 따라야 할 투명성 및 보고 의무를 규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⁶⁶⁾

위원회 보고서는 비개인 데이터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비개인 데이터 당국(Non-Personal Data Authority)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관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개

64) *Ibid.*, pp. 14-15.

65) *Ibid.*, pp. 15-16.

66) *Ibid.*, pp. 17-22.

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의 및 위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⁶⁷⁾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개념 도입은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업 범주로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이 지정한 임계값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또는 저장하는 비즈니스(정부기관 포함)는 모두 데이터 비즈니스로 분류된다. 이 개념은 수평적 분류이므로, 어떤 분야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든 해당될 수 있다.⁶⁸⁾

해당 비즈니스는 최초 등록 시 비즈니스 ID(또는 국가 코드 및 국가 비즈니스 ID), 디지털 플랫폼/비즈니스 이름, 관련 브랜드 이름, 대략적인 데이터 트래픽, 사용자 수, 기록 및 데이터 측면에서 수집된 누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과 데이터 수집, 집계, 처리, 사용, 판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등의 종류도 명시해야 한다.⁶⁹⁾ 해당 비즈니스가 앞서 설정된 데이터 트래픽/수집 한도를 초과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비개인 데이터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⁷⁰⁾ 모든 데이터 비즈니스는 수집, 저장, 처리된 데이터 요소 및 사용 목적, 이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 등을 공표해야 한다. 데이터 비즈니스가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인도의 디렉터리에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하며,⁷¹⁾ 인도 내 모든 기관은 메타데이터 디렉터리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⁷²⁾

모든 기관은 특정 목적하에 비개인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즉 ① 주권적 목적(국가 안보 또는 법적 요건 등), ② 공익적 목적(정책 수립 또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 ③ 경제적 목적(공정한 경쟁의 장 또는 금전적 대가 제공)을

67) *Ibid.*, pp. 40-41.

68) *Ibid.*, p. 27.

69) *Ibid.*, p. 28.

70) *Ibid.*, pp. 27-28.

71) *Ibid.*, p. 29.

72) *Ibid.*, p. 29.

위해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 데이터, 커뮤니티 데이터 또는 개인 데이터(민간 단체가 수집한 원시/사실관계 데이터로 제한)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⁷³⁾ 다만 알고리즘이나 독점적 지식은 데이터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⁷⁴⁾

라. 디지털 인디아법(안)

인도 연방정부는 2023년 「디지털 인디아법안(Digital India Act 2023)」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2000년 「정보기술법(IT Act 2000)」을 대체하는 입법 프레임워크이다. 「정보기술법」은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소관 법이다. 이 법은 IT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며, 디지털 영역의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디지털 인디아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이버 범죄, 데이터 보호, 온라인 안전,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법이다. 「정보기술법」을 「디지털 인디아법」으로 대체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법」은 인터넷 초창기에 만들어져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최신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된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법」의 법적 위임 범위가 주로 전자 매체를 통해 수행되는 전자기록, 거래 및 전자서명의 법적 인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피해, 사용자 권리의 모호성, 보안, 여성 및 아동 안전, 조직적인 정보 전쟁, 급진화 및 혐오 표현 유포, 잘못된 정보 및 가짜 뉴스,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⁷⁵⁾

「디지털 인디아법」은 인도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경제적 측면, 즉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가 명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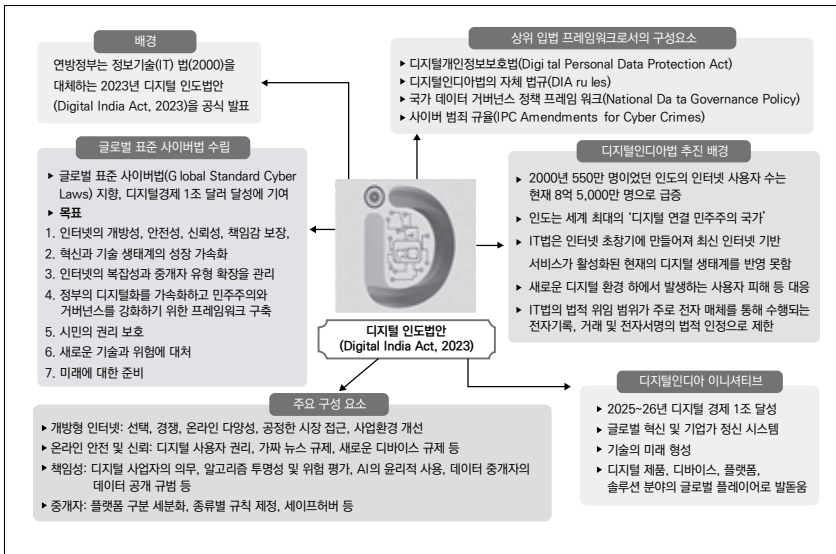
73) *Ibid.*, pp. 34-36.

74) *Ibid.*, p. 26.

75)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23), p. 2.

2025~26년까지 디지털 경제 1조 달러 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⁷⁶⁾ 「디지털 인디아법」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포괄적인 「글로벌 표준 사이버 법률(Global Standard Cyber Laws)」을 지향한다.⁷⁷⁾ 이에 따라 「디지털 인디아법」은 2023년 도입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사이버 범죄 규율(IPC Amendments for Cyber Crimes), 그리고 자체적 규정(DIA rules)의 최상단에 위치한 법률로 자리매김한다(그림 2-5 참고).

그림 2-5. 디지털 인디아법(안) 개요



자료: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23).

「디지털 인디아법」은 개방형 인터넷(Open Internet), 온라인 안전 및 신뢰(Online Safety and Trust including User Harm), 책임성(Accountability), 중개자(Intermediaries) 등 주요 주제로 구성되며,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기술이 중점 고려사항이다.

76) Ibid., pp. 5-7.

77) Ibid., p. 13.

‘개방형 인터넷’은 선택, 경쟁, 온라인 다양성, 공정한 시장 접근, 사업환경 개선을 포함한다. 특히 공정거래 관행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플랫폼(법률적으로 대개 중개자(intermediary)로 통칭)에 대한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시장 지배적 애드테크(Ad-Tech) 플랫폼, 앱스토어 등의 규제를 통한 시장 지배력 집중 완화, 게이트키퍼 및 왜곡 방지, 디지털 서비스 및 상호 운용 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 역시 강조하는바, 디지털 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정부 및 기타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법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⁷⁸⁾

‘온라인 안전 및 신뢰’는 사용자에 대한 위해(harm)를 다루며, 잊혀질 권리, 안전한 전자적 수단에 대한 권리, 구제받을 권리, 디지털 상속권, 차별에 대한 권리,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디지털 사용자 권리,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웨어러블 등 새로운 디바이스 규제 등을 다룬다.⁷⁹⁾

‘책임성’은 디지털 사업자(digital operators)를 위한 심판 및 항소 메커니즘, 중개자 프레임워크의 업데이트, 주요 디지털 사업자의 의무, 디지털 사업자의 알고리즘 투명성 및 주기적 위험 평가, 국민의 합법적 권리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도구의 윤리적 사용, 처벌 규정, 효과적인 거버넌스, 특정 임계값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중개자의 데이터 공개 규범, 데이터 중개자가 수집한 익명화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기준 등을 다룬다.⁸⁰⁾

이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 측에 소비자에게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개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관계자

78) *Ibid.*, p. 16.

79) *Ibid.*, pp. 18-19.

80) *Ibid.*, p. 23.

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⁸¹⁾ 또한 소비자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기업 및 인터넷 중개업체에 대한 ‘금지 구역(No-go Areas)’ 설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⁸²⁾

‘중개자’는 플랫폼 구분을 현재의 추세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플랫폼 종류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정보기술법」은 중개자의 유형을 세 가지(소셜 미디어 중개자(SMI),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자(SSMI), 온라인 게임 중개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디지털 인디아법」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미디어, 검색 엔진, 게임, 인공지능, OTT(Over-the-Top) 플랫폼, 기술 서비스 제공자(TSP), 애드테크(광고), SSMI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개자와 관련된 법안 가운데 특히 세이프하버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보기술법」 제79조에 근거한 세이프하버 조항은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중개자의 법적 면책권을 의미한다. 「디지털 인디아법」 도입과 더불어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⁸³⁾

4. 평가와 시사점

가.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디지털 인디아’를 추진하면서 경제사회적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은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상위 데이터 거버넌스 프

81) India Briefing(2023. 7. 3.), “Digital India Bill 2023: Key Provisions, Stakeholder Perspectives”(검색일: 2024. 10. 10.).

82) *Ibid.*

83) 세이프하버에 대한 재검토는 미국,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인도만의 현상은 아니다.

레이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주요 경제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데이터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가 도입한 Faceless, Cashless, Paperless, Presenceless로 구성된 개방형 API인 인디아 스택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주창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원 확인 프로그램인 아드하르는 인디아 스택의 기초가 되며,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시스템(디지털로키)을 잇달아 도입하고, 이어서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인 UPI를 도입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DEPA를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DEPA는 금융 부문을 시작으로 의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을 기초로 하여 사회 전체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인디아 스택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고).

나. 데이터 규범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인도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이며 실용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목적 제한과 통지 의무, 그리고 보호 장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데이

터보호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법의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권한이 모호하거나 집행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첫째, 동의에 대한 예외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7(b)항은 정부 서비스 수혜자가 '이전에' 국가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동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 서비스 제공에 이점을 주면서, 동시에 정부가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는 인도의 정부 주도 디지털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탁자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수탁자에 대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두 차례 이상의 금전적 과징금 부과 시, 그리고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해당 데이터 수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⁸⁴⁾ 셋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에 계약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기업에 불투명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향후 적용상의 구체화를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 이 법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데이터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국가 및 공공 질서의 보안을 위한 정부 기관의 데이터 처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의 데이터 저장 기간, 사용 목적 제한 등의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둘째,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감 개인 데이터에 대한 판정을 중앙정부에 맡기고 있다는 점⁸⁵⁾은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위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인도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부문별 규제 기관이 현지화 요건을 부과할 경우 이 법에 우선하

84) *Ibid.*, chapter IX, article 37.

85) Government of India(2023), 'extracts from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43A.' 기업이 민감 개인 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예상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GDPR과 비교해보면,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 준하는 엄격한 동의 규정을 도입하고 별도의 데이터보호위원회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징벌적 성격을 띤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두어 데이터 주체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중요 데이터 수탁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서, 과거 인도 정부의 입장에 비해 변화된 부분이며, GDPR과는 상반된 접근법이다.

표 2-1. 인도와 EU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항목 | 인도 | EU |
|---|--|---|
|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 GDPR |
| 적용 대상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
| 민감 데이터 | 민감, 비민감 데이터 구분 없음. 민감 데이터의 범위 등은 별도 법령에 따름. | 민감, 비민감 데이터 구분 |
| 중요 데이터 수탁자 (SDF: significant data fiduciary) | SDF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의무 부과 | 해당 개념 없음. |
| 동의 | 강한 동의(explicit consent) | 강한 동의에 해당 |
| 동의 예외 (legitimate interest) | 관련 규정 존재 | 해당 규정 없음. 동의 규정만 존재 |
| 동의 철회 권리 | 관련 규정 포함 | 관련 규정 포함 |
| 계약 | 계약에 근거한 데이터 처리 | 계약은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로 명시되지 않음. |
|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 해당 규정 포함 | 해당 규정 없음. |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 원칙적 허용(블랙리스트) 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가에 대해 데이터 이동을 제한 | 원칙적 불허(화이트리스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기초한 선별적 허용 |
| 데이터 침해 발생 시 규제기관 통지 | 데이터 침해 신고 의무에 대한 임계치 설정 | 해당 규정 없음(데이터 침해 시 무조건 신고 의무). |
| 위반 시 벌금 | 징벌적 벌금 부과 | 징벌적 벌금 부과 |
| 데이터보호위원회 설치 | 해당 규정 포함 | 해당 규정 포함 |

자료: Government of India(2023a) 및 EU(2016)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법제도의 회색지대 또는 영역 바깥에 있는 비개인 데이터를 규율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비개인 데이터가 포함되며, 반대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일정 부분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는 명백히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회색지대와 더불어, 그 바깥에 있는 비개인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만들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와 유사하게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IndiaAI Mission의 일환으로 산하의 IndiaAI Innovation Centres(IAIC)를 중심으로 인도 스타트업과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비개인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⁸⁶⁾

다만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데이터 비즈니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안된 법제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임꺽값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데이터 비즈니스로 하여금 매우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기설정된 데이터 트래픽을 초과할 경우 세부 사항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 점 등은 민간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인도의 디렉터리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원안 그대로 갈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최근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인도 스타트업과 기업에만 제공되고 외국 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 비개인 데이터 플랫폼을 강조했다⁸⁷⁾ 이는 「디지털 개

86) "Centre to develop non-personal data collection platform for India Inc"(2024. 3. 12.)(검색일: 2024. 10. 10.).

87) *Ibid.*

인데이터보호법」의 진전된 개방화 수준과 상치되는 것이다. 비개인정보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인도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법제도 구체화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디아법」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설계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법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은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이 법은 이미 수립된 데이터 거버넌스에 더해 플랫폼, 그리고 신기술 도입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분화된 플랫폼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도입,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데이터 규제 도입은 어떤 수준으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표 2-2. 인도 데이터 규범의 주요 내용과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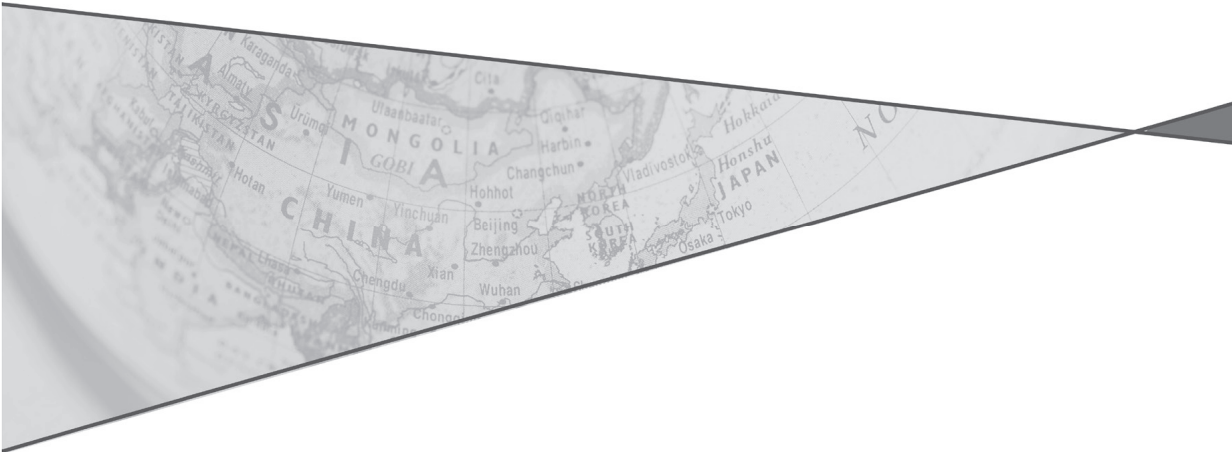
| 법령 | 주요 내용과 현안 |
|---------------------------|---|
|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제 근거 도입 -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에 계약을 포함하지 않음. - 데이터 역외 이전의 원칙적 허용, 이전 금지 대상 리스트 발표 예정 -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 우선 적용: 정부 데이터, 금융·회계 데이터,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 - 세부 시행규칙 개발 중 |
|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임꺽값을 설정하고 규제 - 구체적인 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 -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국내 저장 의무화 등 |
| 디지털 인디아법안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 변화 - 플랫폼 종류를 세분화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강화 등 규제 도입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한 데이터 규제 도입 등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의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먼저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검토하고, WTO에서 인도의 입장, 미국, EU, 호주, 중국과의 양자 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도의 디지털통상정책 또는 협력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서 인도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분야의 협력 추진 상황을 별도로 분석한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 단위에서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통상규범을 활용, 대응하는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도는 매우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요컨대 디지털 포용, 개발과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로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식민주의와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데이터 권한 확보를 도모하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하에 인도는 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국외 이동 제한 및 정부 권한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 결정적인 요인은 인도가 미국, 중국과 더불어 경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디지털 시장과 기업의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가 적극적인 개방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무역,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다자간 통상 포럼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MC13에서는 자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면서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WTO 관세 유예 연장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⁸⁸⁾ 그에 앞서 일본에서 개최된 G20에서 제

안된 ‘신뢰를 통한 데이터 자유 흐름(Data Free Flow with Trust)’에 대해, 이를 주도한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았다.⁸⁹⁾ 또한 인도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공동성명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⁹⁰⁾ 인도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등 데이터 연관도가 높은 분야에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록 표 1 참고), 인도의 데이터 관련 규제는 글로벌 다자간 통상규범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도는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도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인도가 통상 포럼에서 데이터 개방화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만,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인도는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및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전자상거래(또는 디지털 무역) 챕터를 포함했으며, 두 협정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을 약속하고 있다.⁹¹⁾ 또한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경우 전자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한다는 노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표 2 참고).⁹²⁾

미-중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 논리는 인도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우호국으로서 인도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역할을 위해 중국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야는 인도의 주요 관심 분야이다. 2장에서 분석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는 인도

88) 이천기, 이주관, 박지현(2024).

89) "India Not in a Position to Accept Concept of Data Free Flow with Trust: Piyush Goyal" (2020. 9. 22.) (검색일: 2024. 8. 30.).

90) WTO General Council(2021).

91) Government of India(2018), chapter 10; Government of India(2022), chapter 9.

92) Government of India(2022), chapter 9.

가 개도국 대상으로 확산을 강하게 희망하는 분야로서, 이를 위해 우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역학 관계와 그에 따른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제기하는 인도와의 현안, 그리고 호주, 영국, EU, 미국과의 양자 간 FTA 협상 또는 대화 채널을 통해 논의되는 어젠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별도의 절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가. WTO

인도는 2019년 3월 출범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선언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동 이니셔티브에 불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를 이어나가며 이 복수국 간 협정의 위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영역은 1998년부터 지속되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 이슈이다. 인도 정부는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하면서 12차, 1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막판에 연장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⁹³⁾ WTO 13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 유예의 종료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다자협상에서 인도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⁹⁴⁾ 그러나 모라토리엄의 정의와 범위 등에 논의를 위한 일정

93) CSIS(2024).

94) 이천기, 이주관, 박지현(2024), p. 10.

은 구체화되지 않았다.⁹⁵⁾

인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지속되어 온 것이며, 이는 자국의 이익과 더불어 국제 포럼에서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대표해온 인도의 전통적 역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와 남아공이 공동으로 WTO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⁹⁶⁾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의 적용 범위를 ‘전송(transmission)’에 한정하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내용물(contents 또는 products)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영화, 인쇄물,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사운드 및 음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내용물이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확장될 것이라는 시각하에 ‘관세 모라토리엄의 부정적 영향이 개도국에게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도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중요한 무역 정책 도구로서 관세 사용을 중단함에 따른 산업정책의 제약, 관세 수입 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관세 모라토리엄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 데이터 통제, 그에 따른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는 능력은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을 줄이는 대신 집중과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⁹⁷⁾ 인도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개도국의 정책적 이익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입 규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⁸⁾

인도는 향후 WTO 전자적 전송 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면적 움직임은 다자 포럼에서 인도의 입장이 산업정책, 자국 내 기업의 이해관계 등과

95) 위의 자료, p. 37.

96)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20), "India's joint submission with South Africa on 'E-Commerce Moratorium'"(검색일: 2024. 11. 14.).

97) *Ibid.*

98) "India to oppose continuation of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com trade at WTO meet" (2024. 5. 31.)(검색일: 2024. 11. 14.).

상충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자세한 내용은 4절 참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리더라는 인도의 특수한 위상, 그리고 정책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인도의 전통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미국

미국은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국가이다. 미국 정부는 2023년 NTE 보고서에서 「2022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보호법안(Draft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22)」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2024년 동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보고서는 이전 버전의 법안에 비해 진전되었지만, 「2022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도 국외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목적지로 특정 국가를 승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도 국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⁹⁹⁾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는 2024년 NTE 보고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는 2023년 최종적으로 통과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대상 국가 선정 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은 전자결제 데이터의 국내 저장 의무화 규정이다. 2018년 인도중앙은행(RBI)은 모든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가 인도 시민의 전자 결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도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했다. 2019년 RBI는 결제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해야 한다는 요건이 인도에서 영업하는 은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¹⁰⁰⁾

99) USTR(2023a), p. 209.

100) USTR(2024), p. 205.

미국 정부가 지속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이다. 2021년 시행된 ‘2021년 정보 기술(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규정)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IT Rules)’은 인도 정부가 인도에서 소셜 미디어, 메시징,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운영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등록 사용자 수 500만 명 이상인 ‘중요한(significant)’ 소셜 미디어 중개자 및 플랫폼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NTE 보고서는 이 규정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개별 직원에게 개인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규정 준수 기한과 삭제(takedown) 프로토콜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¹⁰¹⁾

한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지속적으로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NTE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데이터 관련 장벽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인도가 전자 전송에 대한 WTO의 관세 유예에 반대함으로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CCIA는 지리공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외국 기업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2021년 발표한 지리공간 가이드라인¹⁰²⁾이 인도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요건과 사용 통제를 인도 현지 기업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2022년 4월 도입된 인도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가상사설망(VPN)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인도 컴퓨터 긴급 대응팀(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

101) *Ibid.*

102)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2023b).

업 및 VPN 제공업체에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고객의 이름과 IP 주소 포함)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이 VPN, 클라우드 및 기타 여러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고객의 활동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인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한다.¹⁰³⁾

바이든 행정부 이래 미국이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별로 없었다. 특히 IPEF의 첫 번째 필라에서 인도가 탈퇴함으로써 디지털 무역, 데이터에 대해 인도와 구체적으로(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02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인도 통상장관 간 무역정책포럼(Trade Policy Forum)에서도 디지털 무역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¹⁰⁴⁾ 미국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날 움직임을 MC13에서 보였으며, 이로 인해 여타 국가들에 정책적 공간을 더욱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와 개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깊이 인식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지털 통상 및 데이터 현안과 관련하여 인도에 대한 양자 간 통상압박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인도 정부는 관세, 이민 등의 현안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통상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데이터 등 디지털 통상현안이 일부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관세 장벽 완화와 인도가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통상 현안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고려하에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확산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2023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인도-미국

103) CCIA(2023), pp. 3-4.

104) USTR(2023b).

105) "US move to withdraw some digital trade proposals at WTO to benefit India"(2023. 10. 27.) (검색일: 2024. 9. 3.).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에 디지털 공공 인프라 관련 협력을 포함시켰다. 양국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실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 확산을 위해 미국-인도 글로벌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¹⁰⁶⁾ 또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QUAD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미국과 일본, 호주가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

다. EU

2022년 7월 EU-인도 FTA 1차 협상에서 EU 측이 디지털 무역 챕터를 제안한 이후 양국은 2024년 7월 8차 협상을 진행했다. EU가 인도에 제안한 디지털 무역 챕터 초안에는 양자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각종 데이터 현지화 조치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¹⁰⁷⁾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¹⁰⁸⁾ 이는 EU가 영국과 체결한 협정과 거의 동일한 문구로,¹⁰⁹⁾ EU는 인도와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정책적 방향성을 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도 역시 GDPR의 무역장벽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⁰⁾ 8차 협상 현재 양측은 데이터 이동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¹¹¹⁾

양국 간 데이터 규범 이슈는 궁극적으로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의 호환성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의회는 2021년에 EU-인도 관계에 관한 권고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인도의 데이터 보호법 제정 노력을 EU가 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EU 주도의 글로벌 데이터

106) White House(2023. 6. 22.),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검색일: 2024. 11. 14.).

107) European Commission(2022).

108) European Commission(2020).

109) European Parliament(2024a), p. 10.

110) "India-EU trade mustn't stumble on digital sovereignty"(2024. 5. 1.)(검색일: 2024. 9. 3.).

111) European Commission(2022), "EU-India agreements: Documents"(검색일: 2024. 9. 3.).

거버넌스 체제로 인도를 편입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나,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¹¹²⁾

글상자 3-1. EU의 디지털 통상정책

EU의 디지털 무역정책은 자국 데이터 보호정책과 상대국 법체계의 호환성을 추구하는 기본 원칙 위에서, 규칙 기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EU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연결을 강화하여 AI, 안전한 국제 연결,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경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혁신, 표준 등 여러 중요한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기구에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EU는 디지털 협력을 대외 관계의 핵심으로 삼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기존의 FTA 협정을 보완하고 있다.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EU는 연례 고위급 회의인 디지털 파트너십 위원회를 설립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속력이 없는 디지털 무역 원칙을 논의한다. 이 원칙은 데이터 거버넌스(신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정부 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무역 촉진(종이 없는 거래, 단일 창구, 전자 계약,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전자 송장 등), 소비자 신뢰(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안전 등), 비즈니스 신뢰(개방형 인터넷 액세스, 사이버 보안, 소스 코드 및 암호화 관련 기술 보호 등)를 다룬다. 이는 디지털 무역의 주요 이슈를 망라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하에서 EU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European Parliament(2024a), p. 6.

EU는 아직 인도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EU-인도 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 간 TTC는 i) 전략 기술, 디지털 거버넌스 및 디지털 연결성, ii) 친환경 및 청정 에너지 기술, iii) 탄력적인 가치사슬, 무역 및 투자에 중점을 둔 3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실무 그룹은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는 다자간 협력체인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내에서의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EU의 「인공지능법」, 인도의 인공지능 국가 프로그램(2022년 3월 채택),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

112) European Parliament(2023), "Adequacy of India's data privacy law with regard to EU GDPR standards" (검색일: 2024. 9. 3.).

워크 정책 초안(2022년 7월) 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인도와 EU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인도가 주도하여 2023년 G20 정상 선언에서 채택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에 EU가 협력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¹¹³⁾

양국 간 TTC에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현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개최된 양국 간 TTC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근본적인 갈등 요소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양측은 디지털 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으나, 가장 큰 의견 불일치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나타났다. EU 측은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당시에는 아직 통과되기 이전 법안을 토대로 논의했다) EU GDPR에 준하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나 제도적 메커니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인도 전자부 산하에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EU의 우려가 제기되었다.¹¹⁴⁾

라. 호주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서 인도를 설정하고, 2018년에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 디지털 무역이 언급되어 있다.¹¹⁵⁾ 호주와 인도는 2015년 FTA 협상을 실패한 바 있으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을 시작하여, 2022년 4월에 중간협

113) European Parliament(2024b), p. 2.

114) “EU, India kick off digital cooperation with underlying frictions on data”(2023. 5. 17.) (검색일: 2024. 9. 3.).

115) Varghese(2018), p. 4.

정인 호주-인도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AI-ECTA: Australia-Indi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

호주는 인도 디지털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강점을 가진 인도에도 호주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¹¹⁶⁾ 호주는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관계 강화를 통해, 호주-중국 사이의 긴장관계와 미국-중국 기술경쟁에 따른 대체시장이자 전략적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와 인도는 이미 사이버 및 사이버 기반 핵심 기술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 on the Cyber and Cyber-enabled Critical Technology Cooperation)¹¹⁷⁾과 호주-인도 사이버 및 핵심 기술 파트너십(AICCTP: Australia-India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Partnership)¹¹⁸⁾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이니셔티브(Resilient Supply Chains Initiative)¹¹⁹⁾와 쿼드 핵심·신흥 기술 워킹그룹(Qua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에¹²⁰⁾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이처럼 첨단기술 측면에서 인도와 전략적 협력의 틀을 구축한 상황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과 제도 조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둔다고 판단된다.

호주는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로서,¹²¹⁾ 일반적으로 CPTPP의 문안에 준하여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¹²²⁾ 디지털 무역 임시협정(AI-ECTA)에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조항이 없었지만, 양국은 디지털 무

116) 김정곤 외(2020).

1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0. 6. 4.), "Australia and India agree new partnership on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검색일: 2024. 9. 4.).

11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1. 6. 10.), "1st Meeting of the India — Australia Joint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 Cooperation"(검색일: 2024. 9. 4.).

119) DFAT(2021. 4. 27.), "Joint Statement on the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by Australian, Indian and Japanese Trade Ministers"(검색일: 2024. 9. 4.).

12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1. 4. 16.), "Qua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검색일: 2024. 9. 4.).

121) 김정곤 외(2020).

122) 호주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의 내용은 [부록 표 3] 참고.

역 규정을 최종 결과물인 CECA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0차 CECA 협상에서도 디지털 무역이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양측은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디지털 제품 차별 금지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무역 원활화, AI와 같은 분야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¹²³⁾

AI-ECTA에 디지털 무역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관련 챕터는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 인도는 일부 분야에서 AI-ECTA에서 GATS 양허(부록 표 1 참고)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허용했다. 즉 인도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모드 3(상업적 존재)과 더불어 모드 1(국경 간 공급), 모드 2(해외소비) 관련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 서비스 가운데서도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기타 금융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모드 1~3에 걸쳐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였다.¹²⁴⁾ 이러한 개방화 조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또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이동 관련 기업 활동상의 제약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²⁵⁾

한편 서비스 무역 챕터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conduct of ordinary business)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전성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유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²⁶⁾ 그러나 이것은 금융서비스 관련 당사국의 양허 수준에

123) "India-Australia CECA: Focus on key areas to expedite trade pact"(2024. 8. 25.)(검색일: 2024. 9. 4.).

124)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India ECTA Annex 8E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 Schedule of India"(검색일: 2024. 9. 4.).

125) 더욱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즉 서비스 무역 협정의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의 경우 인도가 양허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는 외국 기업의 활동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부과될 경우, 이것이 일반 또는 안보상의 예외 사항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합리화되지 못할 수 있다[Mitchell and Mishra(2023), p. 18].

달려 있는바, AI-ECTA에서 인도의 금융서비스 분야 양허 수준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중국

2020년 국경 분쟁 이후에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2020년 4월 인도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도 기업에 대한 기회주의적 인수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인도와 육로 접경 국가(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네팔 및 파키스탄)로부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투자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다.¹²⁷⁾ 이에 더하여 2022년 6월 인도 정부는 육로 접경 국가의 국민이 인도 회사의 이사로 임명하려면 내무부로부터 보안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¹²⁸⁾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 기업의 인도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기업의 투자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2020년 4월 조치 이후 2021년 중반까지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으나, 이후로는 승인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29일 기준 중국 법인과 관련된 80건의 FDI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 조치 이후 해당 시점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382건의 투자신청이 있었다).¹²⁹⁾ 이후에도 중국 기업의 투자 신청은 계속되었다.¹³⁰⁾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강한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실질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첨단기술

126)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Government of Australia)(2022), "Australia-India ECTA Annex 8E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Schedule of India"(검색일: 2024. 9. 4.).

127) UNCTAD, "India: Introduces FDI screening originating from neighbouring countries amid the COVID-19 pandemics"(검색일: 2024. 9. 5.).

128) UNCTAD, "India: Restricts backdoor entry of foreign investors from neighbouring countries"(검색일: 2024. 9. 5.).

129) "India approved 80 FDI proposals involving Chinese entities: data"(2022. 7. 6.)(검색일: 2024. 9. 5.).

130) "Indian govt has 54 Chinese investment proposals pending - finance minister"(2023. 3. 27.)(검색일: 2024. 9. 5.).

및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2019년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 구입을 금지한 데서 표출된 바 있다.¹³¹⁾ 또한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갖고 있었으며, 국경 분쟁을 계기로 이것이 완전히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2020년 초까지 18개 인도 유니콘 기업에 대해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투자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¹³²⁾

데이터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매우 강하고 실질적이다. 중국 기업이 온라인 스토어, 결제 게이트웨이, 메시징 서비스 등 인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가 비등했다. 또한 중국 기업이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의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고, 이것이 인도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³³⁾ 즉 중국 기업이 인도의 각종 데이터를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인도의 강한 우려 사항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확보, 그리고 중국의 인도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재 인도 정부는 중국 IT 기업의 투자와 중국 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¹³⁴⁾ 데이터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모두 투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10억 달러 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를 안보상의 문제로 불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¹³⁵⁾ 한편 제3국 기업(브랜드)이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의 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중국 기업의 데이터 안보상 위협에 대한 우려는 인도 내에서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 요구로도 연결되고 있다.¹³⁶⁾

131) China Chamber of Commerce in India(2023).

132) Bhandardi, Fernandes, and Agarwal(2020), pp. 9-11.

133) *Ibid.*, pp. 9-11.

134) "138 Chinese apps that got banned by the Indian Government: Complete list, reason and more" (2023. 2. 6.)(검색일: 2024. 9. 5.).

135) "India rejects BYD's \$1 billion factory proposal, Economic Times reports"(2023. 7. 22.)(검색일: 2024. 9. 5.).

136) Bhandardi, Fernandes, and Agarwal(2020), p. 18.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인도의 투자 제한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인도 정부가 비민감 분야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2020년 조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가 대중국 투자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은 제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중국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¹³⁷⁾ 그러나 인도의 중국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 그리고 중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할 때,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개방화 조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는 다자 무역기구나 양자 무역협정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무역 의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개도국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는 국제기구에서 DPI 프레임워크 의제를 선도하면서 자국의 디지털 거버넌스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G20

인도는 의장국을 맡은 2023 G20에서 DPI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인도 정부는 2023년 발족한 ‘경제 혁신, 금융 포용 및 개발을 위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에 관한 인도 G20 태스크포스(TF)’를 통해 DPI의 정의와 주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인도

137) "India's Finance Minister backs increasing Chinese direct investment"(2024. 7. 23.)(검색일: 2024. 11. 14.).

정부는 해당 TF가 제시한 DPI의 정의와 프레임워크가 G20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브라질과 2026년 남아공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¹³⁸⁾

실제로 뉴델리 G20 정상 선언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제안된 G20 DPI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고 명시되어,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도의 제안과 계획이 공식적으로 지지되었다.¹³⁹⁾ 또한 2023 G20 디지털 경제장관 성과 문서 및 의장보고서에서는 DPI를 “인도 의장단의 이니셔티브에 따라(Under the Indian Presidency’s initiative)”, “일련의 공유 디지털 시스템(a set of shared digital systems)으로 인식(recognise)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해당 문서의 부속서 1로 ‘G20 DPI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G20 DPI 프레임워크에는 DPI의 기본 원칙과 구성 요소, 제안 원칙, 기본 기능, 활성 요소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도 TF가 제안한 DPI의 주요 개념과 범주, 거버넌스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표 3-1 참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속서 7항에는 DPI가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시스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과 같은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인 데이터 보호 장치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¹⁴⁰⁾

이러한 내용은 인도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의 비전과 핵심 구성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DPI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인도의 전략이 구체화, 공식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8) Ministry of Finance(2024. 7. 15.), “Report of India’s G20 Task Force on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released”(검색일: 2024. 11. 10.).

139) 자세한 내용은 G7G20(2023), “G20 New Delhi Leaders Declaration: 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 Building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56항 i.ii. iii(검색일: 2024. 11. 11.) 참고.

140) 해당 조항에서는(ANNEXURE 1. 7.) DPI의 기본 기능들(basic functions)에 “개인 및 비즈니스의 신원 확인, 안전하고 원활한 자금과 정보 흐름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며, DPI가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시스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과 같은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기본 기능을 충족할 수 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인 데이터 보호 장치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3-1.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 분야 | | 주요 내용 |
|-----------------------------|-------------------|---|
| DPI 정의 | | “안전하고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개방형 표준과 사양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사회적 규모에서 공공 및/또는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 포용, 혁신, 신뢰, 경쟁을 촉진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applicable) 법적 프레임워크와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일련의 공유 디지털 시스템(a set of shared digital systems)” ¹⁴¹⁾ |
| 3대 구성 요소 | 기술 (technology) | -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 (예시: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토콜, 표준) |
| | 거버넌스 (governance) | -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범분야(cross-cutting) 및 분야별 규범, 법률 및 정책, 디지털 기술에 내장된 거버넌스로, 인권 존중과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하는 안전장치와 접근 가능하고 투명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이 포함됨. - 설계, 배포 및 구현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는 책임 있는 기관 -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자금 확보 모색 |
| | 공동체 (community) | - 혁신을 촉진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 |
|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제안 원칙 | | a. 포용성, b. 상호 운용성, c. 모듈성 및 확장성(Extensibility), d. 규모 확장성(Scalability), e. 보안 및 프라이버시, f. 협력, g. 공공의 이익, 신뢰 및 투명성을 위한 거버넌스, h. 고충 처리, i. 지속 가능성, j. 인권, k. 지적 재산권 보호, l. 지속 가능한 발전 |
| 혁신, 성장, 포용의 활성화 요소(enables) | | - 경제 활동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기본 기능: a. 신원확인(Identification) b. 결제(Payments) c.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with consent wherever applicable) |

자료: G20(2023c); G20(2023b)를 토대로 저자 정리.

141) 해당 정의는 「G20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성과문서 및 의장보고서」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G20(2023c). 한편 「DPI를 통한 금융 포용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G20 정책 권고」 보고서에서는 DPI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 지원하는 상호 운용 가능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되었다. G20(2023a).

나. 국제기구 및 양자 간 협력

G20뿐만 아니라 IMF,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인도의 DPI 모델은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를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인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¹⁴²⁾ IMF는 2023년 발표한 워킹페이퍼¹⁴³⁾에서 인디아 스택으로 불리는 인도의 DPI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금융 포용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 수입 징수를 늘리며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DPI를 개발하는 인도의 여정이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에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드하르와 UPI, NPCI 등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인도 DPI의 주요 구성 요소와 구축 방법, 성공 요인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다른 국가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2024년 9월 22일 UN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이하 GDC)에서 제시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는 DPI에 대한 공동의 노력 사항이 포함되었다.¹⁴⁴⁾ 이를 뒤인 9월 24일에는 UN 사무총장기술특사실(OSET)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보편적 DPI 보호 프레임워크(The Universal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afeguards Framework)’가 발표되었는데,¹⁴⁵⁾ 이 프레임워크에는 GDC 프로세스에서 DPI의 역할과 보호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¹⁴⁶⁾

인도 정부는 DPI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DPI의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9월 QUAD의 4개국 정상은 ‘디지털

142) World Economic Forum(2023. 8. 23.),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India’s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검색일: 2024. 11. 12.).

143) IMF Asia and Pacific Department, Fiscal Affairs Department, Mone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2024. 3. 31.), “Stacking up the Benefits: Lessons from India’s Digital Journey.”

144) United Nations(2024), “Global Digital Compact”(검색일: 2024. 11. 12.).

145) United Nations(2024), “The Universal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afeguards Framework: A Guide to Building Safe and Inclusive DPI for Societies”(검색일: 2024. 11. 12.).

146) UNDP(2024. 9. 24.), “UN Releases Universal DPI Safeguards Framework to Promote Safe and Inclusive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검색일: 2024. 11. 12.).

공공 인프라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원칙(Quad Principles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원칙은 포용성, 상호 운용성 등 G20 2023에서 제안된 12개의 DPI 개발 및 배포 원칙(표 3-1 참고)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¹⁴⁷⁾ 또한 2024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에서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 강화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하고, 채택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¹⁴⁸⁾

이처럼 인도 정부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DPI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국 데이터 거버넌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개별 국가 또는 권역별로도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인도는 주요 선진국과 DPI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개도국들에는 인도 DPI 모델을 참고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정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표 3-2 참고).

147) U.S. Department of State(2024. 9. 22.), "Quad Principles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검색일: 2024. 11. 12.).

148) "A new Resolution on Enhancing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2024. 10. 24.), "ITU-WTSA 2024 Concludes: India Leads the Charge for Shaping the Future of Telecommunications/ICT with Global Backing for Its Pioneering Resolutions in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Innovation"(검색일: 2024. 11. 12.).

표 3-2. 국가 및 권역별 인도의 DPI 협력 현황

| 국가/권역 | | 협업의 주체 |
|------------|---|--|
| 미국 | 인도-미국 양국 정상 | (‘23. 6.)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DPI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DPI 구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제공에 협력하기로 합의 |
| EU | 인도-EU 통상기술위원회(TTC) | (‘23. 3.) 인도-EU 통상기술위원회(TTC) 출범. 인도와 EU의 DPI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개도국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논의 |
| 프랑스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관부 | (‘23. 10.) 양국이 디지털 기술 분야의 G2B 및 B2B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술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승인’ ¹⁴⁹⁾ *(‘23. 2.) 인도 NPCI는 프랑스 Lyra Network와 프랑스 내 UPI 결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 스리랑카 | 인도-스리랑카 양국 정부 | (‘22. 3.) 스리랑카와 인도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도의 아드하르와 유사한 스리랑카 고유 디지털 신원(SLUDI)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인도에 프로젝트 관리 및 자금을 지원함. ¹⁵⁰⁾ |
| | 인도-스리랑카 양국 정상 | (‘23. 7.) 양국은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비전’을 채택 ¹⁵¹⁾ 하고 스리랑카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따라 인도의 DPI를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IV. e항) |
| | 인도 대사관 - 스리랑카 기술부 | (‘24. 3.) DPI 컨퍼런스 개최, 해당 컨퍼런스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의 디지털 발전 모델 도입 언급 ¹⁵²⁾ |
| 말레이시아 | 인도-말레이시아 양국 정상 | (‘24. 8.) DPI가 포함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체결 인도-말레이시아 디지털 위원회를 설립하고 DPI, 사이버 보안, 5G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
| 아프리카 | 인도 정부-아프리카 디지털 금융 포용 기금(ADF) | (‘23. 8.) 아프리카에서 인도 DPI 모델 확산을 위해 인도 정부가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관리하는 ADF에 200만 달러를 지원함. |
| ASEAN | ASEAN-인도 정상회의 | (‘24. 10.) 제21차 ASEAN-인도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강화를 위한 아세안-인도 공동 성명’ 발표. 중점 협력 분야에 DPI, 금융 기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포함 |
| 글로벌 사우스 |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VOGSS) | (‘24. 8.) ‘개발을 위한 DPI-Global South 접근법’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장관 세션’ 개최 ¹⁵³⁾ |
| QUAD |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 | (‘24. 10.) DP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Quad 원칙 발표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DPI를 구현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와 사이버보안 강조 |

자료: 인도 총리실/외무부/전자정보기술부, 인도 현지 언론, 각국 정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149) PM India(2023. 10. 11.), “Cabinet approv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India and Franc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검색일: 2024. 11. 10.).

150)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인도-스리랑카 공동 프로젝트 모니터링 위원회(JPMC)도 설립하였다. 인도는 SL-UDI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독하고 있으며, 2023년 약 540만 달러(4억 5천만 루피)를 지원

인도가 각 국가 또는 권역별로 협력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는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과 DPI를 통한 개도국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이들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DPI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개도국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드하르를 기반으로 각국이 고유한 디지털 신원 시스템과 금융·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본 디지털 신원 시스템인 MOSIP(모듈형 오픈 소스 신원 플랫폼; The Modular Open Source Identity Platform)¹⁵⁴⁾는 필리핀, 모로코, 스리랑카, 우간다, 에티오피아, 기니 공화국, 시에라리온 등 11개 국가에 도입되어 구축되고 있다.¹⁵⁵⁾ 인도의 벵갈루루 국제정보기술연구소(IITB)가 개발한 MOSIP 플랫폼은 세계은행의 연구개발 요청에 따라 저개발국 및 개도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인도의 아드하르와 유사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하였다. "India hands over ₹45 crore to Sri Lanka to fund its digital identity project"(2023. 8. 5.)(검색일: 2024. 11. 10.).

1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ri Lanka(2024), "India-Sri Lanka Economic Partnership Vision"(검색일: 2024. 11. 10.).

152) "Sri Lanka Looking to Adopt India's Digital Model"(2024. 3. 24.)(검색일: 2024. 11. 10.).

153)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 1. 19.), "The 3rd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4"(검색일: 2024. 11. 10.).

154) MOSIP(검색일: 2024. 11. 10.).

155) "IITB Develops Platform to Provide Aadhaar-like Digital Identities for Nine Countries"(2022. 12. 28.); "Made-in-India: An Identity Tool for the World's Development Needs"(2023. 9. 17.)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1. 11.).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가. 인디아 스택 활용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은 디지털 ID 프로젝트인 아드하르(Aadhaar)로부터 시작되어, 종이 없는 행정과 현금 없는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발전해왔다. 인도 정부는 인디아 스택을 개방형 API 및 디지털 공공재로 규정하고, 전 세계 관계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NeGD(National e-Governance Division)가 운영하는 인디아 스택 글로벌(India Stack Global) 사이트에서는 아드하르, 디지록커(DigiLocker), UMANG 등의 디지털 글로벌 상품(Digital Global Goods)을 소개하고, 다른 기업 및 국가들과 협업을 제안하고 있다.¹⁵⁶⁾

인도 진출기업들은 인디아 스택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사업 기회를 얻는다. 인디아 스택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 디지털 인증 등에서 효율적으로 현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도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인디아 스택의 결제(Cashless Layer), 디지털 서명(Paperless Layer) 부문을 활용하여 인도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다. 각 사례는 인디아 스택이 외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현지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¹⁵⁶⁾ India Stack Global Website(검색일: 2024. 10. 1.).

표 3-3. 레이어별 해외 기업의 인디아 스택 활용 사례

| 레이어 | 기업명 | 활용 스택 | 내용 |
|-----------------------------|------------|--------|--|
| 결제 (Cashless Layer) | Google Pay | UPI | 2017년부터 UPI를 통한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 2024년에는 UPI의 영향력을 인도 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NPCI.int와 MoU 체결 ¹⁵⁷⁾ |
| 디지털 서명 (Paperless Layer) | DocuSign | e-Sign | 2023년부터 e-Sign 솔루션을 활용해 전자 서명 및 디지털 서명을 통해 문서에 법적 효력 부여 |

자료: NPCI(검색일: 2024. 11. 10.) 및 기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구글 페이(Google Pay)

모바일 지갑 및 결제 앱인 Google Pay는 인도 NPCI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활용해 2017년부터 인도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UPI는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제3자 결제개시 서비스(PIS)¹⁵⁸⁾를 통해 사용자가 별도의 은행 접속이나 금융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계좌이체나 결제를 하도록 지원한다. Google Pay는 이러한 UPI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도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으로 UPI 결제 시장에서 약 3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PhonePe(약 4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잡았다.¹⁵⁹⁾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에는 Google Pay가 NPCI International과 MoU를 체결하고 인도 외 지역에서도 UPI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들도 인도와 유사한 UPI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57) NPCI(2024. 1. 17.), "Google Pay India signs MoU with NPCI International for Global Expansion of UPI"(검색일: 2024. 11. 10.).

158) 사용자가 직접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계좌정보서비스(AIS: Account Information Service) 방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Google pay, Phonepe)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계좌이체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159) "Exclusive: India to Again Delay Caps on UPI Payments Market Share"(2024. 5. 10.)(검색일: 2024. 11. 9.).

이는 인디아 스택을 활용해 성과를 거둔 해외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인디아 스택의 세계적 확산을 추진하려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결제 부문에서 인디아 스택 활용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 도큐사인(Docusign)

글로벌 전자 서명 1위 업체인 DocuSign은 인도 e-Sign 프레임워크와의 직접적인 통합 대신에, 현지 전자 서명 업체인 eMudhra와 협력하여 인도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Mudhra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Aadhaar 기반의 전자 서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¹⁶⁰⁾ DocuSign은 eMudhra e-Sign 전자 서명을 활용하여,¹⁶¹⁾ DocuSign의 고객들이 인도 내 Paperless Layer 자원을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¹⁶²⁾

DocuSign은 eMudhra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ocuSign India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고용하였으며, 2024년 8월에는 벵갈루루에 새로운 기술 센터를 설립하였다. DocuSign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는 벵갈루루 센터에서 새로운 솔루션 개발뿐만 아니라, 제작 및 테스트, 배포에 이르는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⁶³⁾

이러한 사례는 해외 기업이 인디아 스택의 Paperless Layer를 활용하여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혁신을 선도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160) eMudhra Official Website(검색일: 2024. 11. 13.).

161) DocuSign Support(2024), "Enabling eSignature for Legal Compliance in India"(검색일: 2024. 11. 13.).

162) 인도에서는 「2000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에 따라 전자 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DocuSign(2024), "Lega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n India"(검색일: 2024. 11. 13.).

163) "DocuSign Expands India Operations, Opens New Office in Bengaluru"(2024. 9. 6.); "India Is Driving Our Product Innovation and Growth: DocuSign CTO"(2024. 10. 17.)(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1. 14.).

특히 DocuSign은 전 세계 180여 개 시장에서 150만 명 이상의 고객과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인디아 스택을 활용하여 인도 현지에서 개발된 솔루션이 본 글로벌(Born global)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 데이터 현지화 요건 대응

1) 마스터카드(MasterCard)

MasterCard는 2018년 인도중앙은행(RBI)의 데이터 현지화 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제재를 받았으나,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나가며 인도 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8년 RBI는 결제 데이터를 인도 내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 저장을 허용하는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는 결제 관련 모든 데이터(거래 정보 및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 아드하르 번호, PAN 등 포함)를 인도 내에 저장해야 했다. 특히 해외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24시간 이내에 인도로 전송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MasterCard는 같은 해 10월 푸네에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일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거래는 해외에서 처리된 후 인도로 전송되었다. RBI는 MasterCard가 해외 데이터 처리 일부 부문에서 인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MasterCard의 신규 고객 온보딩을 무기한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MasterCard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빠르게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2022년 6월 RBI는 이러한 개선을 인정하여 제재를 해제했다.

이처럼 MasterCard는 인도 정부의 현지화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4년 10월 인도 푸네에 최첨단 기술 허브를 개소하며 인도 내 데이터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였다. 해당 허브에서는 결제

보안, 사이버보안, 사기 탐지 등의 기능과 MasterCard의 글로벌 기술 운영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인도 정부의 데이터 주권 요구를 준수함으로써 인도 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4. MasterCard의 인도 데이터 현지화 규제 주요 대응 조치

| 연도 | 내용 |
|------|---|
| 2018 | [4월] RBI는 결제 시스템 데이터 저장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 ¹⁶⁴ [10월] MasterCard는 푸네에 위치한 시설에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으나 일부는 해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한 후 푸네로 전송, 저장함. |
| 2021 | [7월] RBI는 데이터 현지화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MasterCard의 국내 신규 고객 온보딩을 무기한 금지함. ¹⁶⁵ |
| 2022 | [6월] RBI는 MasterCard가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규 고객 온보딩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함. ¹⁶⁶ |
| 2024 | [10월] MasterCard는 인도 푸네에 최첨단 기술 허브를 개소함. 해당 기술 허브에서는 결제 안전, 사이버보안, 사기 탐지, 디지털 신원 확인 등 MasterCard의 글로벌 기술 운영을 지원함. |

자료: RBI 및 MasterCard 사이트(검색일: 2024. 11. 1.)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2) 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는 2011년 델리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인도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다. 2016년 뭄바이 리전과 2022년 하이데라바드 리전을 가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에는 2030년까지 인도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12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¹⁶⁷

164) RBI는 인도 내에서 결제 데이터를 저장할 책임을 '시스템 제공자'(즉, 은행과 PSO)에게 부여하고 6개월 이내인 2018년 10월 6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시스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였다. Reserve Bank of India(2018b),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검색일: 2024. 11. 1.).

165) Reserve Bank of India(2021. 7. 14.), "Reserve Bank of India Takes Supervisory Action on MasterCard Asia / Pacific Pte. Ltd"(검색일: 2024. 11. 1.).

166) Reserve Bank of India(2022. 6. 16.), "Reserve Bank of India Lifts the Business Restrictions Imposed on MasterCard Asia / Pacific Pte. Ltd"(검색일: 2024. 11. 1.).

이러한 AWS의 데이터 센터 확대는 인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인도 당국의 데이터 현지화 규정 준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AWS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은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¹⁶⁸⁾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RBI)의 요구, 그리고 인도 보험 규제 및 개발청(IRDAI)과 SEBI(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표 3-5 참고).

예를 들어 인도 중앙은행(RBI)은 RBI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 시스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인도 현지에서 저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보험 규제 및 개발청(IRDAI)에서 수행하는 검사 점검 목록 중에는 ‘클라우드 호스팅 정책이 중요한 비즈니스 기록을 인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까?’라는 문항이 있는데, AWS는 하이데라바드 리전을 백업 사이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WS 뭍바이 데이터 센터가 정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도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DRS(Disaster Recovery Site; 재해복구 사이트)를 다른 지진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PDC(Primary Data Center)와 DRS 간에 최소 200km의 거리를 확보하여 단일/동일 재해로 인해 DRS와 PDC가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WS India의 비즈니스 디렉터는 AWS가 이러한 인도의 현지화 정책을 준수하며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¹⁶⁹⁾

AWS가 이처럼 복잡한 규정에 대응하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존(전자상거래)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고객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WS와 같이 데이터 규제를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인도 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현지화 요건 대응은

167) Amazon(2023. 5. 18.), "AWS to invest INR 1,05,600 crores (US \$12.7 billion) into cloud infrastructure in India"(검색일: 2024. 11. 1.).

168) 이용자 데이터가 저장 및 처리되는 물리적 위치가 해당 국가에 속하는 것.

169) "AWS Region in Hyderabad Boosts Cloud Resilience and Compliance"(2024. 8. 6.)(검색일: 2024. 11. 1.).

인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과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표 3-5. AWS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운영 및 규제 준수 현황

| 구분 | 내용 | |
|---------------------------|--|---|
| 제공 서비스 | Amazon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 등 다양한 AWS 서비스 | |
| 운영 지역 | 뭄바이 리전*(2016년 가동 시작)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s) 운영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7억 달러 투자 | |
| 현지화 요건 대응 | 하이데라바드 리전(2022년 가동 시작)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s) 운영 - DRS(Disaster Recovery Site; 재해복구사이트)로 설정 가능 - 2030년까지 약 44억 달러 투자 예정 | |
| 데이터 레지던시 (Data Residency) | 데이터 레지던시 (Data Residency) | 두 리전은 데이터를 국가 내에 유지하면서 지역 간 백업 및 다중 지역 배포를 허용함 특히 하이데라바드 리전을 DRS로 활용하여 재해 시에도 인도 내 데이터 보호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 |
| | 규정 준수 (Compliance) | AWS 인도 내 리전은 RBI, IRDAI, SEBI의 현지 데이터 처리 규정을 준수하며 구축함 |

주: *리전(region)은 별도의 지리적 영역이며,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은 각 리전 내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지칭한다.¹⁷⁰⁾

자료: AWS 공식 사이트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다. 전자적 전송의 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대응

인도 정부의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움 반대 입장은 국내외 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단체들은 2022년 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인도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¹⁷¹⁾ 2024년에는 세계반도체 협의회(WSC: World Semiconductor Council)¹⁷²⁾가 WTO 13차 각료회의

170) AWS User Guide, "Regions and Zones"(검색일: 2024. 11. 1.).

171) Global Data Alliance(2022), "Letter to Minister Piyush Prakash Goyal"(검색일: 2024. 11. 14.).

를 앞두고 모디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 모라토리엄 철폐는 반도체 칩 설계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세는 인도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반도체 투자 유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³⁾

인도의 대표적인 IT 기업 연합체인 NASSCOM은 인도의 전자적 전송 관세 모라토리엄 연장 수용 여부가 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테크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수출, IP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¹⁷⁴⁾ 또한 인도 전자 및 반도체 협회(IESA: India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 Association)와 인도 중소기업 포럼(India SME Forum)은 “관세 모라토리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에도 중요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도 중소기업이 연간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IT 기반 서비스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⁵⁾

인도 정부의 입장과는 상이한 연구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IGPP(2023)은 센서스 데이터, NSS(National Sample Survey), 산업연관표 등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 수입이 1% 증가하면 인도 내 MSME의 고용이 0.4~0.8%, 부가가치가 0.1~0.2% 증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0.04~0.0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¹⁷⁶⁾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도 정부가 지적하는 선진국과 대비하여 큰 개도국의 세수 감소분, 국내 산업정책 공간의 상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 선진국

172) WSC는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산업협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WSC, ‘Members’(검색일: 2024. 10. 2.).

173) “India’s stance on data transfers at WTO spooks chip giants”(2024. 2. 23.)(검색일: 2024. 9. 30.).

174) NASSCOM(2020).

175) “Electronic transmission: Two industry bodies want ‘no customs duty’ to stay”(2024. 2. 12.)(검색일: 2024. 10. 2.).

176) 이 연구에는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 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인도 무역촉진위원회(TPIC: Trade Promotion Council of India)와 같은 인도의 정책수립과 연계된 주요 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IGPP(2023).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우려 등¹⁷⁷⁾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도 내 기업들의 단기, 중장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유효한바,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을 둘러싼 인도 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은 국제 포럼에서 인도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2절 참고). NASSCOM(202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판단되며, 국내외 기업이 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데이터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

1) 게임 앱

한국 기업 크래프톤은 자체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앱 버전(PUBG Mobile)을 2018년 인도에 출시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지만, 크래프톤의 지분 일부를 보유한 텐센트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배급망을 통해 2018년 인도에 이 게임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앱은 인도의 국민 게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20년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각종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했으며, 이 가운데 당시 중국 게임으로 인식되었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앱도 포함되었다.¹⁷⁸⁾ 이에 대응하여 크래프톤은 중국과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옮기는 등 인도 정부에 앱 판매 재개를 위한 소명을 하였다. 또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중국 게임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기존 게임을 Battlegrounds Mobile India(BGMI)로 리브랜딩하여 직접 배급하기 시작했다

177) WTO(2021).

178) Press Information Bureau(2020. 9. 2.), "Government Blocks 118 Mobile Apps Which are Prejudicial to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ndia, Defence of India, Security of State and Public Order"(검색일: 2024. 8. 30.).

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에는 인도에 지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BGMI의 배급이 다시 시작되었다.

2022년 7월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 국민 정보 유출을 이유로 다시 BGMI 앱을 금지했다. 인도 정부는 차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앱은 7월 28일 Google Play Store 및 Apple Inc.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었다. 당시 1억 명 이상의 인도 사용자를 보유한 BGMI 제거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다수의 중국산 모바일 앱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금지 기간 중에 BGMI 앱은 VPN 등을 통해 이용되었다.¹⁷⁹⁾ 이러한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02년 정보기술법(IT Act 2002)」 69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조치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IT 기업에 대한 국가 안보상의 우려였다. BGMI는 애초에 텐센트를 통해 인도에 배급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중국 게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인도 정부의 안보상의 우려로 이어졌다. 또한 인도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에 속한 SJM(Swadeshi Jagran Manch)이 정부에 BGMI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⁸⁰⁾ 반면 BGMI 금지 조치에 대해 인도 게임산업계는 전반적으로 반감을 표출했다. 게이머, 유튜버들은 BGMI 금지가 생계를 위협한다고 발언하였으며,¹⁸¹⁾ 업계 관계자는 당시 인도 e스포츠 산업이 BGMI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BGMI Masters 토너먼트가 TV로 방영되면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¹⁸²⁾

크래프톤은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BGMI가 한국 게임'이라는 점을 인도 정부에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⁸³⁾ 그 결과 인도 정부는 3개월의

179) "India blocks Krafton's Battlegrounds Mobile India on concerns over data sharing in China"(2022. 7. 29).(검색일: 2024. 11. 14.).

180) *Ibid.*

181) *Ibid.*

182) "How Krafton brought PUBG successor Battlegrounds back from a ban"(2024. 1. 11.).(검색일: 2024. 11. 14.).

한시적 서비스 재개 기간을 둔 이후에 2023년 5월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¹⁸⁴⁾

중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크래프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BGMI가 ‘한국 게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크래프톤은 2024년 3월 구자라트 주정부와 e스포츠 및 게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한국 정부의 협력하에 현지에서 e-sports 대회를 개최했다.¹⁸⁵⁾ 또한 크래프톤은 CSR을 강조하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 스타트업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인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출범했다.¹⁸⁶⁾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중국 IT 기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일부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¹⁸⁷⁾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진출기업은 사전에 서버 등 데이터 저장 위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 IT 기업은 인도 진출 시 한국 브랜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도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대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2) 전기차

2023년 7월 인도 정부는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의 인도 공장 투자를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다.¹⁸⁸⁾ BYD는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의 주도인 하

183) 크래프톤 관계자 면담(2024. 10. 29.).

184) 위의 자료.

185) 「크래프톤, “인도서 BGMI 차단 사실무근”...구자라트주와 협력」(2024. 3. 14.)(검색일: 2024. 11. 14.).

186) “Gaming major Krafton launches incubator programme for Indian startups”(2023. 10. 4.)(검색일: 2024. 11. 14.).

187) 크래프톤은 텐센트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인도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88) “India rejects Chinese automaker BYD’s \$1 billion plan over ‘security concerns’: Report”(2023. 7. 22.).

이테라바드(Hyderabad)에 본사를 둔 인프라 엔지니어링 업체인 MEIL(Megha Engineering and Infrastructure Ltd.)과 협력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였다.¹⁸⁹⁾ 그러나 관련 투자 심의 과정 중 인도 상무부, 인도 산업무역진흥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가 보안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⁰⁾ 이번에 인도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 정부의 중국인 관광 비자 발급 금지 조치에 따라 BYD 관계자가 인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되면서 BYD의 인도 투자가 무산되었다.¹⁹¹⁾

인도 정부는 2022년 4월에도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 내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인도에서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환영하나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의 인도 내 판매는 부적절하다고만 언급하여 보안상의 이슈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기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BYD의 투자 협력을 제지하였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강경 조치는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를 통한 데이터 수집 문제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¹⁹²⁾

189) *Ibid.*

190) *Ibid.*

191) "BYD's US\$1 billion investment plan reportedly rejected by India on security grounds in blow to global strategy" (2023. 7. 24.)(검색일: 2024. 10. 15.).

192) "FACT SHEET: Protecting America from Connected Vehicle Technology from Countries of Concern" (2024. 9. 23.)(검색일: 2024. 10. 15.).

5. 평가와 시사점

가.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인도는 다자간 통상포럼에서는 디지털 무역 개방화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개도국 리더로서의 명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자 간 디지털 통상협력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되 상대국가에 따라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관세 모라토리엄 철폐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4절 참고). 인도는 WTO에서 명분을 우선시하되, 양자 간 협정에서는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과 같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 두 국가의 경우 인도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는 호주와 EU와의 통상협상에서는 보호주의적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 데이터와 관련된 양자 간 통상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논의는 결론 부분 참고). 그러나 정부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법제 논의 시 외국 기업의 의견이 전달될 경로가 있는바,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인도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인도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벤치마크 대상으로서 중요도가 높다. 특히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PR을 기초로 수립된 법으로서, 상호 법제도의 호환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인도 법제도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제가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규범보다

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성을 띠 가능성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호주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현지점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ECTA의 서비스 무역 협정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인도의 제도 수립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노력조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인도의 디지털 무역 분야 협력은 전략적 목표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질서의 진영화에 따라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 아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분야의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케이스별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예컨대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제조 등 인도의 경쟁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 완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전자 및 통신 등 민감 부문에 대한 제한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¹⁹³⁾ 아울러 분야의 민감성뿐만 아니라 인도 기업의 지분과 경영에 대한 영향력 역시 투자 승인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3) "India likely to ease curbs on some Chinese investments, sources say"(2024. 7. 24.) (검색일: 2024. 9. 5.).

표 3-6. 인도와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논의와 현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 국제기구/국가 | 예상 현안 |
|----------|---|
| WTO | - 인도는 전자적 전송 관세 모라토리엄 철폐 주장(자국의 경제적 실익과 상충 가능성 존재) - 전자상거래협정 불참, 포럼 외부에서 영향력 행사 |
| 양자 간 FTA | -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전자적 전송 관세 모라토리엄 포함 - 인도-UAE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전자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한다는 노력 조항 포함 - 호주, EU와의 FTA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 불포함 |
| 미국 | - 인도에 대한 양자 간 디지털 통상 현안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인도 진출 미국 기업을 통한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 지속 - QUAD를 통한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 협력 확대 |
| EU | -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의 주요한 벤치마크 대상 - 인도의 GDPR 적정성 심사 통과는 시일을 요할 전망 - 인공지능을 둘러싼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논의 확대 가능성 - 인도의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호응 |
| 호주 | -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관철은 쉽지 않을 전망 - CECA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 인도의 개방화 조치 유도 - QUAD 등 전략적 협력의 틀에서 인도와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분야 교류 확대, 제도적 호환성 등 추구 |
| 중국 | -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 지속 - 중국으로 데이터 이전을 강하게 규제 -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인도는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를 활용해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와 QUAD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도 DPI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인도가 주도하는 DPI 프레임워크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입지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G20, UN 등에서 인도의 DPI 프레임워크가 지지받고 있는 만큼, 인도가 주도하는 DPI 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디지털 거버넌스 규범 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EU 등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인도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부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와의 협력 방식 및 협력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할지는 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식과 방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다. 기업 진출 사례

인디아 스택을 활용한 기업 진출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데이터는 정부 주도로 구축된 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및 정부의 인증을 받은 현지 기관과 협력을 통해 법적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디아 스택을 활용한 서비스를 인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본 글로벌(Born-global) 전략의 가능성이다. 인도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실행 경험과 그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인디아 스택이라는 개방형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인도 진출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 외의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요건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인도는 데이터 주권 강화와 보안을 위해 외국 기업에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적용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의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적용받는 기업은 인도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한편, 인도 현지에서 기술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도 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하고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지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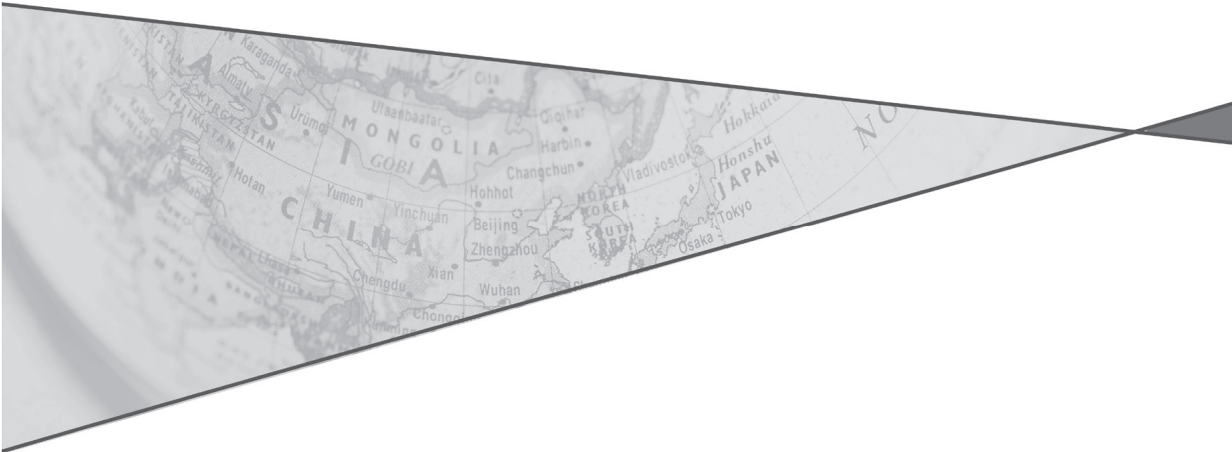
인도의 디지털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인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강하게 희망하면서 자국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WTO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 폐기는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외기업은 물론, 인도의 국내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바,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의 앱에 대한 규제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중국의 전기차 투자에 대한 불허 조치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 산업과 같이 인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우, 인도 국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 장에서는 2~3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관련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양국 정부 간 협력 또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범, 통상협력상의 현안을 논의하며, 이어서 본 연구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가. 데이터 규범 현안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PR을 벤치마킹하여 예상보다 신속히 도입되었으며, 선진적인 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에 계약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는 달리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정부 데이터, 금융·회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하여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도의 비개인 데이터 규범의 향방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데이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인도 정부는 비개인 데이터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향후 가장 주목할 만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제도의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로서,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 종류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규정을 도입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나. 통상협력

인도는 디지털 무역, 특히 데이터 이슈에 관한 다자간 통상포럼 논의에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선진국인 미국, EU 등에 대한 견제이면서, 여타 WTO 현안(예컨대 글로벌 투자협정 채택 문제)에 대한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대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장 반대의 경우 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통상협상에서는 타 주제와 연계한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인도는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도 데이터 관련 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 AI-ECTA는 디지털 무역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인도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모드 3(상업적 존재)과 더불어 모드 1, 2 관련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또한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모드 1~3에 걸쳐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을 완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이동 관련 기업 활동상의 제약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

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인도-UAE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과 같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한다는 노력 조항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도와의 양자 간 디지털 경제·통상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⁹⁴⁾ 이것을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정기적인 양국 정부 간 논의 채널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규범적 현안과 더불어 다양한 협력 이슈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정부 간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부 간 교류’ 항목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 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QUAD에서 기후변화 등의 현안보다는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 관련 협력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¹⁹⁵⁾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QUAD에서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원칙(Quad Principles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을 발표하면서 인도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와 우호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QUAD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절 참고).

194) 김정곤 외(2020), p. 330.

195) The Asia Group(2024), pp. 1-2.

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협력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데이터 규제와 같은 경성적인 차원보다는, 신 투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측면보다는 자국이 주도할 의지가 있는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이다. 인도는 2023년 G20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를 주도했으며, 2024년 WTO 각료회의에서 인도가 주장한 것 역시 송금을 위한 자국 금융 메커니즘인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UPI)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었다.¹⁹⁶⁾ 또한 QUAD에서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의 외교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바,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디아 스택으로 대표되는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다. 실제로 미국, EU, 프랑스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인도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 관련 기술 표준화 활동을 시작한 것은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요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은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구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정례적 채널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196)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4), “Forget about Trump: Why Europeans should start worrying about trade tensions with emerging economies”(검색일: 2024. 11. 14.).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인도가 추구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모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디지털 ID, 통합결제 시스템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중요 요소인바,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의 입장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공 부문 디지털화 협력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 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40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 EDCF 자금 등 인도에 대한 ODA를 확대할 방침인데,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는 한국의 자금과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202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하고 5G·오픈랜(Open RAN)·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대인도 협력을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판단된다.¹⁹⁷⁾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인도 정부는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정부 부문의 데이터 효율성 개선, 데이터 이용자 편의성 향상, 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을

197) 한국수출입은행(2024).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도시별로 교통, 전력, 재해, 수자원 관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 중이다. 교통관리 시스템, 메트로, 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 운영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 폐기물 관리, 전력공급, 재해 관리, 인터넷 연결성 등을 포함한 도시 통합 관제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¹⁹⁸⁾

특히 국가 도시 디지털 미션(National Urban Digital Mission)은 세금 징수·납부, 상하수도 등 14개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모든 주에 적용하고자 한다.¹⁹⁹⁾ 이는 △ 센서나 IoT 장치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금 징수 및 예산 운영 노하우, △ 폐기물 관리 추적 시스템(가정에서부터 폐기물 처리장까지) 등을 포괄한다. 인도 정부는 교통, 교육, 보건,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분야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²⁰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부 간 교류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양자 간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변화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도 정부와의 접점이 별로 없는 상황인바,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한 현안 대응이나 협력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기

198) NITI Aayog, Abhishek Agarwal 면담(2024. 9. 24., 뉴델리); 김정곤 외(2024)에서 재인용.

199) NIUA(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 관계자 면담(2024. 9. 24., 뉴델리); 김정곤 외(2024)에서 재인용.

200) 위의 자료.

때문이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다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작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인도의 상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다. 참고할 사례로 서울국제경쟁포럼을 들 수 있다.²⁰¹⁾ 이 포럼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조사당국 수장 및 담당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식, 조사 방법,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안 발생 시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 더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한-인도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3장 기업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인도 정부와 접촉하기는 쉽지 않다. 외교부 주도로 2024년 수립된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인도 상무부의 DPIIT에 설립된 인베스트 인디아를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의 단독 대응보다는 제3국과의 공조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이미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협력이 실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류에 따라, 인도에서 일본 정부, 기업과 공동 대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대인도 투자 분야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금융, 통신, 유통, 물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데이터 법규 관련 양국 기

201) 공경경영연합회(2023),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검색일: 2024. 11. 14.).

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한국과 일본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인도 정부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²⁰²⁾

바. 기업 진출 지원

디지털 분야 신흥 시장으로서 인도에 주목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서비스산업발전 특별전담반(TF)은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안)’을 발표했다.²⁰³⁾ 이에 따라 ① 수출 체계(패러다임)에 대응한 수출 유망 품목 육성, ②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③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²⁰⁴⁾ 그리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하여 아세안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다만 신흥시장 대상지역으로 인도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현지 지원에서도 인도는 제외되었다. 정부의 디지털 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디지털 기업 진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현재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 시장정보 제공, △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제품 현지화 마케팅 지원, △ 해외 거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²⁰⁵⁾ 과 해외진출 디지털 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도에 특화된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등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국가이다. 여기에는 인도에 거점을 가진 전문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2) 코트라(2024).

203) 관계부처 합동(2023).

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5)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3), pp. 63~64.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인도의 데이터 인프라는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인도 진출 여건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인증을 받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인디아 스택에 기반한 현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3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블랙리스트 방식을 취하면서 규제 여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화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비개인 데이터에 대한 규율 부재 등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인도 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대시장으로서 인도의 잠재력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국 기업들은 진출 시 인도의 분야별 현지화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제 적용 양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인도 정부의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있는바, 중국 데이터 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인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진출기업들이 협력하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도는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또한 상기한 데이터 규범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들이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도 내 타국 기업들과의 공조 역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PR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인도의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투자,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인도 정부 및 국민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도 정부의 신뢰를 얻으면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결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경훈, 김정곤, 한형민, 노윤재. 2023. 『인도의 증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증장기통상전략연구 2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곤, 나승권, 이재호, 윤지현, 김은미. 2020.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곤, 김도연, 윤지현, 강반디, 이순철. 2024.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전략연구 2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천기, 이주관, 박지현. 2024.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코트라. 2024. 「일본의 대인도 투자 변화와 인도에서의 한일 협력」.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수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1)』.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EU의 비개인 데이터 정책동향」.

[영문자료]

- Bhandardi, Amit, Blaise Fernandes, and Aashna Agarwal. 2020. “Chinese Investment in India.” *Gateway House Report No. 3*. Gateway House Indian Council on Global Relations.
- China Chamber of Commerce in India. 2023.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India (2021~2022)*.
-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CCIA). 2023. “Key Threats to Digital Trade 2023: India.”

- CSIS. 2024. "Insight into the 13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T, Government of India). 2012. "National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Policy-2012."
- _____. 2015. *National Telecom M2M Roadmap 2015*.
- _____. 2023a. "License Agreement for Unified License."
- _____. 2023b. "Guidelines for acquiring and producing Geospatial Data and Geospatial Data Services including Maps."
-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017. "FDI Policy 2017."
- European Commission. 2020.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F THE OTHER PART. Article DIGIT 6. Cross-border data flows. and Article DIGIT 8.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_____. 2022. "Digital Trade Article X.6."
- European Parliament. 2024a. "The EU's digital trade policy."
- _____. 2024b. "EU-India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 Government of India. 1993. "Public Records Act."
- _____. 2013. "Companies Act 2013."
- _____. 2018.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India and Singapore." Chapter 10.
- _____. 2022. "India-UA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greement.” Chapter 9.
- _____. 2023a.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23.”
- _____. 2023b. “extracts from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43A.”
- G20. 2023a. “G20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vancing Financial Inclusion and Productivity Gains through DPI.” (September 7)
- _____. 2023b. “Digital Economy Ministers Meeting Annex 1 G20 Framework for Systems of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 _____. 2023c. “Digital Economy Ministers Meeting Outcome Document and Chair Summary.” (August 19)
- IMF Asia and Pacific Department, Fiscal Affairs Department, Mone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2024. “Stacking up the Benefits: Lessons from India’s Digital Journey.” (March 31)
- IGPP. 2023. “The Impact of Cross-Border Digital Transmissions on the MSME Sector in India and the Benefits of the WTO E-Commerce Moratorium.”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IRDAI). 2015. “IRDAI (Maintenance of Insurance Records) Regulations, 2015.”
- _____. 2017. “IRDAI (Outsourcing of Activities by Indian Insurers) Regulations, 2017.”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00. “Information Technology Act in 2000.”
- _____. 2011. “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Rules, 2011.”

-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Government of India). 2020. "Report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Non-pers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
- _____. 2022. "Cybersecurity Directions 2022."
- _____. 2023. "Proposed Digital India Act, 2023."
-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2021. "Consumer Protection (Direct Selling) Rules, 2021."
- Ministry of Finance. 2019. *Economic Survey Volume I*.
- Mishra, Neha. 2023. "Data Governance and Digital Trade in India: Losing Sight of the Forest for the Trees?" Chander Anupam, and Haochen Sun eds. *Data Sovereignty*.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Andrew and Neha Mishra. 2023. "A NEW DIGITAL ECONOMY COLLABORATION IN THE INDOPACIFIC: NEGOTIATING DIGITAL TRADE IN THE AUSTRALIA -INDIA CECA." *Journal of World Trade*, 57(1).
- NASSCOM. 2020. "Considerations surrounding the Customs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PwC India. 2023. "India phygital index 2023."
- Sinha, Amber and Arindrajit Basu. 2019. "The Politics of India's Data Protection Ecosyste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Engage)*, Vol. 54, Issue No. 49. (December 14)
- Srikrishna Committee. 2018. *A Free and Fair Digital Economy: Protecting Privacy, Empowering Indians*. Committee of Experts under the Chairmanship of Justice B N Srikrishna.
-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SEBI). 2020. "Advisory

- regarding SaaS based solutions.”
- _____. 2023. “Framework for Adoption of Cloud Services by SEBI Regulated Entities.”
- 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India. 2004. “Unified Access License for Telecom Service Providers 2004.”
- The Asia Group. 2024. “TAG Memo? President Trump’s Re-Election and Implications for India.”
- USTR. 2023a. *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_____. 2023b. “Joint Statement on the United States-India Trade Policy Forum.” (January 11)
- _____. 2024. *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Varghese, Peter N. 2018. “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Navigating from Potential to Delivery (Report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 WTO. 2021.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Th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Need for Clarity on Its Scope and Impact.” WT/GC/W/833.
- WTO General Council. 2021. “The Legal Status of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their Negotiated Outcomes, WTO Doc WT/GC/W/819 (Feb. 19, 2021).”

[언론/보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 「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6월 5일)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3.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안)」.
(6월 5일)
- 「크래프톤, “인도서 BGMI 차단 사실무근”…구자라트주와 협력」. 2024. 『연합
뉴스』. (3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4107400017?input=1195m>(검색일: 2024. 11. 14.).
-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 2024. 「수출입銀-美DFC-日JBIC, 인도 ICT 분야
공동 이니셔티브 서명」. (10월 27일)
- Amazon. 2023. “AWS to invest INR 1,05,600 crores(US \$12.7 billion)
into cloud infrastructure in India.” (May 18). <https://press.aboutamazon.com/in/2023/5/aws-to-invest-inr-1-05-600-crores-us-12-7-billion-into-cloud-infrastructure-in-india>(검색일: 2024. 11. 1.).
- “AWS Region in Hyderabad Boosts Cloud Resilience and Compliance.”
2024. *CNBC*. (August 6). <https://www.cnbc.com/technology/aws-region-in-hyderabad-boosts-cloud-resilience-and-compliance-19455645.htm>(검색일: 2024. 11. 1.).
- “Cash rules in India despite digital payment boom.” 2023. *BBC*. (December
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67674453>
(검색일: 2024. 10. 15.).
- “Centre to develop non-personal data collection platform for India
Inc.” 2024. *Business Standard*. (March 12).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ustry/news/centre-to-develop-non-personal-data-collection-platform-for-india-inc-124031101007_1.html(검색일: 2024. 10. 10.).
- DFAT. 2021. “Joint Statement on the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by Australian, Indian and Japanese Trade Ministers.” (April 27).
<https://www.dfat.gov.au/news/media-release/joint-statement>

-supply-chain-resilience-initiative-australian-indian-and-japanese-trade-ministers-(검색일: 2024. 9. 4.).

“Digital India Bill 2023: Key Provisions, Stakeholder Perspectives.” 2023. *India Briefing*. (July 3). <https://www.india-briefing.com/news/digital-india-bill-2023-key-provisions-stakeholder-perspectives-28755.html>/(검색일: 2024. 10. 10.).

“DocuSign Expands India Operations, Opens New Office in Bengaluru.” 2024. *PR Newswire*. (September 6). <https://www.prnewswire.com/in/news-releases/docusign-expands-india-operations-opens-new-office-in-bengaluru-302240371.html>(검색일: 2024. 11. 14.).

“Electronic transmission: Two industry bodies want ‘no customs duty’ to stay.” 2024. *The Economic Times*. (February 12).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electronic-transmission-two-industry-bodies-want-no-customs-duty-to-stay/articleshow/107638012.cms?from=mdr>(검색일: 2024. 10. 2.).

“EU, India kick off digital cooperation with underlying frictions on data.” 2023. *EURACTIV*. (May 17). <https://www.euractiv.com/section/data-privacy/news/eu-india-kick-off-digital-cooperation-with-underlying-frictions-on-data/>(검색일: 2024. 9. 3.).

“Exclusive: India to Again Delay Caps on UPI Payments Market Share.” 2024. *Reuters*. (May 10).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india-delay-payments-market-cap-helping-walmart-backed-phonepe-google-pay-2024-05-09/>(검색일: 2024. 11. 9.).

“Gaming major Krafton launches incubator programme for Indian

- startups.” 2023. *The Economic Times*. (October 4).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startups/gaming-major-krafton-launches-incubator-programme-for-indian-startups/articleshow/104138368.cms>(검색일: 2024. 11. 14.).
- “How Krafton brought PUBG successor Battlegrounds back from a ban.” 2024. *The Economic Times*. (January 1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technology/how-bgmi-avoided-battle-to-win-the-war/articleshow/106707729.cms?from=mdr>(검색일: 2024. 11. 14.).
- “IIITB Develops Platform to Provide Aadhaar-like Digital Identities for Nine Countries.” 2022. *The Hindu*. (December 28).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iiitb-develops-platform-to-provide-aadhaar-like-digital-identities-for-nine-countries/article66333821.ece>(검색일: 2024. 11. 11.)
- “India approved 80 FDI proposals involving Chinese entities: data.” 2022. *The Economic Times*. (July 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technology/india-approved-80-fdi-proposals-involving-chinese-entities-data/articleshow/926449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검색일: 2024. 9. 5.).
- “India-Australia CECA: Focus on key areas to expedite trade pact.” 2024. *businessline*. (August 25).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india-australia-ceca-focus-on-key-areas-to-expedite-trade-pact/article68565079.ece>(검색일: 2024. 9. 4.).
- “India blocks Krafton’s Battlegrounds Mobile India on concerns over data sharing in China.” 2022. *The Economic Times*. (July 2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technology/india-used-it-law-takedown-provision-to-block-krafton-game/article-show/93204416.cms>(검색일: 2024. 11. 14.).

“India-EU trade mustn’t stumble on digital sovereignty.” 2024. *mint*. (May 1). <https://www.livemint.com/opinion/online-views/india-eu-trade-mustn-t-stumble-on-digital-sovereignty-11709219303430.html>(검색일: 2024. 9. 3.).

“India hands over ₹45 crore to Sri Lanka to fund its digital identity project.” 2023. *The Hindu Business Line*. (August 5).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india-hands-over-45-crore-to-sri-lanka-to-fund-its-digital-identity-project/article67161201.ece>(검색일: 2024. 11. 10.).

“India likely to ease curbs on some Chinese investments, sources say.” 2024. *Business Recorder*. (July 24). <https://www.brecorder.com/news/40314166/india-likely-to-ease-curbs-on-some-chinese-investments-sources-say>(검색일: 2024. 9. 5.).

“India Not in a Position to Accept Concept of Data Free Flow with Trust: Piyush Goyal.” 2020. *Financial Express*. (September 22).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india-not-in-a-position-toaccept-concept-of-data-free-flow-with-trust-piyush-goyal/2089478/>(검색일: 2024. 8. 30.).

“India rejects BYD’s \$1 billion factory proposal, Economic Times reports.” 2023. *Reuters*. (July 22). reuters.com/business/india-rejects-byds-1-bln-factory-proposal-economic-times-2023-07-22/(검색일: 2024. 9. 5.).

“India to Delay Payments Market Cap, Helping Walmart-backed

- PhonePe, Google Pay.” 2024. *Reuters*. (May 9)
- “India’s Finance Minister backs increasing Chinese direct investment.” 2024. *Reuters*. (July 23).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indias-finance-minister-backs-increasing-chinese-direct-investment-2024-07-23/>(검색일: 2024. 11. 14.).
- “India’s stance on data transfers at WTO spooks chip giants.” 2024. *Reuters*. (February 23).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stance-data-transfers-wto-spooks-chip-giants-2024-02-23/>(검색일: 2024. 9. 30.).
- “Indian govt has 54 Chinese investment proposals pending - finance minister.” 2023. *Reuters*. (March 27).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n-govt-has-54-chinese-investment-proposals-pending-finance-minister-2023-03-27/>(검색일: 2024. 9. 5.).
- “Justice BN Srikrishna To Head Committee For Data Protection Framework.” 2017. *Economic Times*. (August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justice-bn-srikrishna-to-head-committee-for-data-protection-framework/articleshow/59866006.cms?from=mdr>(검색일: 2024. 8. 29.).
- “Made-in-India: An Identity Tool for the World’s Development Needs.” 2023. *Business Standard*. (September 17). https://www.business-standard.com/technology/tech-news/made-in-india-an-identity-tool-for-the-world-s-development-needs-123091701121_1.html (검색일: 2024. 11. 11.).
- MasterCard. 2024. “MasterCard Opens New State-of-the-Art Tech Hub in Pune, India.” MasterCard Newsroom. (October 15). <https://www.MasterCard.com/news/ap/en/newsroom/press->

releases/en/2024/MasterCard-opens-new-state-of-the-art-tech-hub-in-pune-india/(검색일: 2024. 11. 1.).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024. “ITU-WTSA 2024 Concludes: India Leads the Charge for Shaping the Future of Telecommunications/ICT with Global Backing for Its Pioneering Resolutions in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Innovation.” (October 24).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66593>(검색일: 2024. 11. 1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Ministry of India). 2021. “1st Meeting of the India — Australia Joint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 Cooperation.” (June 10).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33903/1st+Meeting+of+the+India++Australia+Joint+Working+Group+on+Cyber+Security+Cooperation>(검색일: 2024. 9. 4.).

_____. 2024. “The 3rd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4.” (January 19).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38161/The_3rd_Voice_of_Global_South_Summit_2024(검색일: 2024. 11. 10.).

Ministry of Finance. 2024. “Report of India’s G20 Task Force on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released.” (July 15).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2033389>(검색일: 2024. 11.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Government of Australia). 2020. “Australia and India agree new partnership on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June 4). <https://www.foreignminister.gov.au/minister/marise-payne/media-release/australia-and-india-agree-new-partnership-cyber-and-critical-technology>(검색일: 2024. 9. 4.).

“Mukesh Ambani Says ‘Data Colonisation’ As Bad As Physical Colonisation.” 2018. *Economic Times*. (December 1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company/corporate-trends/mukesh-ambani-saysdata-colonisation-as-bad-as-physical-colonisation/articleshow/67164810.cms>(검색일: 2024. 8. 29.).

NPCI. 2024. “Google Pay India signs MoU with NPCI International for Global Expansion of UPI.” (January 17). <https://www.npci.org.in/PDF/npci/press-releases/2024/NPCI-Press-Release-Google-Pay-India-signs-MoU-with-NPCI-International-for-Global-Expansion-of-UPI.pdf>(검색일: 2024. 11. 10.).

Omdia. 2022. “FT-Omdia Digital Economies Index: tomorrow’s top tech growth markets.” *Financial Times*. (November 22). <https://www.ft.com/content/eb373c95-eace-4a9c-9b45-9ace63ae12d5>(검색일: 2024. 12. 10.).

“Over 150 Activists And Experts Write To Srikrishna Committee; Demand Transparency.” 2018. *Medianama*. (July 20). <https://www.medianama.com/2018/07/223-srikrishna-committee-transparency/>(검색일: 2024. 8. 29.).

Press Information Bureau. 2020. “Government Blocks 118 Mobile Apps Which are Prejudicial to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ndia, Defence of India, Security of State and Public Order.” (September 2).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50669> (검색일: 2024. 8. 30.).

PM India. 2023. “Cabinet approv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India and Franc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 (October 11). <https://www.pmindia.gov.in/en/news>

_updates/cabinet-approves-mou-between-india-and-france-on-cooperation-in-the-field-of-digital-technologies/#:~:text=The%20Union%20Cabinet%20chaired%20by,of%20the%20French%20Republic%20on(검색일: 2024. 11. 10.).

Reserve Bank of India(RBI). 2021. “Reserve Bank of India Takes Supervisory Action on MasterCard Asia / Pacific Pte. Ltd.” (July 14). https://www.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51895 (검색일: 2024. 11. 1.).

_____. 2022. “Reserve Bank of India Lifts the Business Restrictions Imposed on MasterCard Asia / Pacific Pte. Ltd.” (June 16). https://www.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53877(검색일: 2024. 11. 1.).

“Sri Lanka Looking to Adopt India’s Digital Model.” 2024. *Ada Derana*. (March 27). <https://www.adaderana.lk/news.php?nid=98233>(검색일: 2024. 11. 10.).

TechCircle. “India Is Driving Our Product Innovation and Growth: DocuSign CTO.” 2024. (October 17). <https://www.techcircle.in/2024/10/17/india-is-driving-our-product-innovation-and-growth-docusign-cto>(검색일: 2024. 11. 14.).

The White House. 2023.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 (June 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6/22/joint-statement-from-the-united-states-and-india/>(검색일: 2024. 11. 14.).

_____. 2024. “FACT SHEET: Protecting America from Connected Vehicle Technology from Countries of Concern.” (September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

releases/2024/09/23/fact-sheet-protecting-america-from-connected-vehicle-technology-from-countries-of-concern/(검색일: 2024. 10. 15.).

UNDP. 2024. “UN Releases Universal DPI Safeguards Framework to Promote Safe and Inclusive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eptember 24). <https://www.undp.org/press-releases/un-releases-universal-dpi-safeguards-framework-promote-safe-and-inclusive-digital-public-infrastructure>(검색일: 2024. 11. 12.).

“US move to withdraw some digital trade proposals at WTO to benefit India.” 2023. *Business Standard*. (October 27). https://www.business-standard.com/economy/news/us-move-to-withdraw-some-digital-trade-proposals-at-wto-to-benefit-india-123102700473_1.html(검색일: 2024. 9. 3.).

“138 Chinese apps that got banned by the Indian Government: Complete list, reason and more.” 2023. *IndiaTV*. (February 6). <https://www.indiatvnews.com/technology/news/138-chinese-apps-that-got-banned-by-the-indian-government-complete-list-reason-and-more-2023-02-06-845066>(검색일: 2024. 9. 5.).

[온라인 자료]

공정경제연합회. 2023.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8월 11일). <https://www.kfcf.or.kr/news/notice/read.do?no=202>(검색일: 2024. 11. 14.).

AWS User Guide. “Regions and Zones.”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using-regions-availability-zones.html>(검색일: 2024. 11. 1.).

Bharat Broadband Network Limited (BBNL) 홈페이지. <https://bbnl.nic>.

in/index1.aspx?lsid=18&lev=1&lid=18&langid=1(검색일: 2024. 10. 15.).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Government of Australia). 2021. “Qua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 (April 16). <https://www.internationalcybertech.gov.au/node/137> (검색일: 2024. 9. 4.).

_____. 2022. “Australia-India ECTA Annex 8E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 Schedule of India.”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in-force/australia-india-ecta/australia-india-ecta-official-text/annex-8e-schedules-specific-commitments-schedule-india>(검색일: 2024. 9. 4.).

DocuSign. 2024. “Lega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in India.” DocuSign Electronic Signature Legality Guide. <https://www.docusign.com/products/electronic-signature/legality/india/>(검색일: 2024. 11. 13.).

DocuSign Support. 2024. “Enabling eSignature for Legal Compliance in India.” DocuSign Support Documentation. https://support.docusign.com/s/document-item?language=en_US&bundleId=xww1594245808169&topicId=acl1688555915412.html&_LANG=enus(검색일: 2024. 11. 13.).

eMudhra Official Website. <https://emudhradigital.com/>(검색일: 2024. 11. 13.).

European Commission. 2022. “EU-India agreements: Documents.”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india/eu-india-agreement/documents_en(검색일: 2024. 9. 3.).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4. “Forget about Trump:

- Why Europeans should start worrying about trade tensions with emerging economies.” (March 27). <https://ecfr.eu/article/forget-about-trump-why-europeans-should-start-worrying-about-trade-tensions-with-emerging-economies/>(검색일: 2024. 11. 14.).
- European Parliament. 2023. “Adequacy of India’s data privacy law with regard to EU GDPR standards.” (June 10).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P-9-2023-002961_EN.html#def1(검색일: 2024. 9. 3.).
- Global Data Alliance. 2022. “Letter to Minister Piyush Prakash Goyal.” (June 16). <https://globaldata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2/09/06162022gdaindcomm.pdf>(검색일: 2024. 11. 14.).
- G7G20. 2023. “G20 New Delhi Leaders Declaration: 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 Building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https://g7g20-documents.org/database/document/2023-g20-india-leaders-leaders-language-g20-new-delhi-leaders-declaration>(검색일: 2024. 11. 11.).
- India Stack 홈페이지. <https://indiastack.org>(검색일: 2024. 10. 15.).
- India Stack Global Website. <https://www.indiastack.global/indiastack-global/>(검색일: 2024. 10. 1.).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1998. “India-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Supplement 4.” <https://www.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india-and-world-trade-organization-wto/indias-gats-schedule-for-commitments-and-offers/general-agreement-of-trade-in-services-gats-schedule-of-specific-commitments/india-schedule-of-specific-commitments-supplement-4/>(검색일: 2024. 8. 30.).

_____. 2020. “India’s joint submission with South Africa on ‘E-Commerce Moratorium.” <https://www.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india-and-world-trade-organization-wto/e-commerce/indias-joint-submission-with-south-africa-on-e-commerce-moratorium/> (검색일: 2024. 11. 14.).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Government of India). “MeghRaj Initiative.” <https://www.meity.gov.in/content/gi-cloud-meghraj>(검색일: 2024. 11.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ri Lanka. 2024. “India-Sri Lanka Economic Partnership Vision.” (July 21). <https://mfa.gov.lk/india-sri-lanka-economic-partnership-vision/>(검색일: 2024. 11. 10.).

MOSIP. <https://mosip.io/governance>(검색일: 2024. 11. 10.).

Niti Aayog. “Strategy for New India@75.” (November). https://www.niti.gov.in/sites/default/files/2019-01/Strategy_for_New_India_0.pdf(검색일: 2024. 10. 15.).

Reserve Bank of India(RBI). 2017. “2017 Directions on Outsourcing of Financial Services by NBFCs.” (November 9). <https://www.rbi.org.in/CommonPerson/english/Scripts/Notification.aspx?Id=2646>(검색일: 2024. 11. 14.).

_____. 2018a. “2018 Circular on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 (April 6).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검색일: 2024. 11. 14.).

_____. 2018b.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Mode=0> (검색일: 2024. 11. 1.).

Supreme Court of India. 2017. “Justice K.S. Puttaswamy (Retd.) and

Anr. Versus Union of India and Ors.” Supreme Court of India Writ Petition (Civil) No. 494 of 2012. (August 24). https://main.sci.gov.in/supremecourt/2012/35071/35071_2012_Judgement_24-Aug-2017.pdf(검색일: 2024. 8. 20.).

UNCTAD. “India: Introduces FDI screening originating from neighbouring countries amid the COVID-19 pandemics.” Investment policy Hub.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3518/india-introduces-fdi-screening-originating-from-neighbouring-countries-amid-the-covid-19-pandemics>(검색일: 2024. 9. 5.).

_____. “India: Restricts backdoor entry of foreign investors from neighbouring countries.” Investment policy Hub.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measures/4013/india-restricts-backdoor-entry-of-foreign-investors-from-neighbouring-countries>(검색일: 2024. 9. 5.).

United Nations. 2024. “Global Digital Compact.” <https://www.un.org/techenvoy/global-digital-compact>(검색일: 2024. 11. 12.).

_____. 2024. “The Universal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afeguards Framework: A Guide to Building Safe and Inclusive DPI for Societies.” <https://www.dpi-safeguards.org/>(검색일: 2024. 11. 12.).

U.S. Department of State. 2024. “Quad Principles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eptember 22). <https://2021-2025.state.gov/quad-principles-for-development-and-deployment-of-digital-public-infrastructure/> (검색일: 2024. 11. 12.).

World Bank. 2017. “Global ID Coverage, Barriers, and Use by the

Numbers: An In-Depth Look at the 2017 ID4D-Findex Survey.”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727021583506631652/pdf/Global-ID-Coverage-Barriers-and-Use-by-the-Numbers-An-In-Depth-Look-at-the-2017-ID4D-Findex-Survey.pdf>(검색일: 2024. 10. 15.).

World Economic Forum. 2023.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India’s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August 23). <https://www.weforum.org/agenda/2023/08/the-international-significance-of-indias-digital-public-infrastructure/>(검색일: 2024. 11. 12.).

WSC. Members. <http://www.semiconductorcouncil.org/about-wsc/members/>(검색일: 2024. 10. 2.).

[통계자료]

EUI. “Digital Trade Integration Project.” <https://dti.eui.eu/database/>
(검색일: 2024. 8. 29.).

OECD. “Going Digital Toolkit. 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as a share of commercial services trad.” <https://goingdigital.oecd.org/en/indicator/71>(검색일: 2024. 9. 11.).

St. Gallen Endowment for Prosperity through Trade. “Digital Policy Alert.” <https://digitalpolicyalert.org/>(검색일: 2024. 8. 29.).

Statista. “OTT Video - India.” <https://www.statista.com/outlook/amo/media/tv-video/ott-video/india?currency=USD>(검색일: 2024. 8. 29.).

[전문가 면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나연 전문연구원 면담(2024. 11. 8., 화상회의).

크래프톤, 김낙형 PD 면담(2024. 10. 29., 화상회의).

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NIUA), Debolina Kundu (Director)
관계자 면담(2024. 9. 24., 뉴델리).

NITI Aayog, Abhishek Agarwal(Senior Specialist Director) 면담(2024.
9. 24., 뉴델리).

부록

부록 표 1. 인도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분야 GATS 양허(specific commitment)

| 업종구분 | 시장접근 제한 | 내국민 대우 제한 |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 |
|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전문 서비스(CPC 841) | 1) 약속 안 함(미양허) | 1) 약속 안 함(미양허) |
|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 2) 약속 안 함(미양허) | 2) 약속 안 함(미양허) |
| c) 데이터 처리 서비스(CPC 843) | 3) 외국 자본 상한이 51%인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 | 3) 제한 없음 |
|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 e)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 서비스(CPC 845) | | |
| 2. 통신 서비스 | | |
| C. 통신 서비스 | | |
| 다음 분야의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 | | |
| h) 전자 메일(CPC 7523)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i) 음성 메일(CPC 7523) | 2) 약속 안 함(미양허) | 2) 약속 안 함(미양허) |
|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 3) 외국 자본 상한이 51%인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 | 3) 제한 없음 |
| l) 저장 및 전달,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향상된/부가가치 팩스 서비스(CPC 7523) |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CPC 843) | | |

부록 표 1. 계속

| 업종구분 | 시장접근 제한 | 내국민대우 제한 |
|---|---|---|
|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배급 서비스(CPC 96113) | 1) 약속 안 함(미양허) 2) 약속 안 함(미양허) 3) i) 인도 외부에 설립된 회사의 지점으로 가능할 수 있는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 ii) 연간 수입 편수 제한(100편)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1) 약속 안 함(미양허) 2) 약속 안 함(미양허) 3) 규정된 당국이 영화가 다음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a) 인도 정보방송부가 통보한 국제영화제 수상작품 b) 통보된 국제영화제의 공식 부문에 참여작품 c) 인도 정보방송부가 통보한 권위 있는 영화 저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4) 수평적 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 함 |

- 주: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존재.
 4) 자연인의 존재.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1998), "India-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Supplement 4" (검색일: 2024. 8. 30.).

부록 표 2. 인도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챗터

| 구분 | 싱가포르-인도 CECA | 인도-UAE CEPA |
|-------------------------------|--------------|-------------|
| 목표 및 목적 - 경제 성장, 무역 기회 증진 등 | ✓ | ✓ |
| 전자적 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항 | ✓ | ✗ |
| 전자상거래 정의의 구체적 범위 또는 제외 사항 | ✓ | ✓ |
| 디지털 제품의 차별 금지 | ✓ | ✗ |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 ✓ | ✓ |
| 투명성 | ✓ | ✗ |
| 전자 인증 | ✗ | ✓ |
| 디지털 ID | ✗ | ✓ |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 | ✓ |
| 스팸 | ✗ | ✓ |
| 개인 데이터 보호 | ✗ | ✓ |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 ✗ | ✓ |
| 오픈 데이터 | ✗ | ✓ |
| 전자 인보이스 발행 | ✗ | ✓ |
| 전자 결제 | ✗ | ✓ |
| 디지털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용 및 접근에 대한 원칙 | ✗ | ✓ |
| 사이버보안 | ✗ | ✓ |

부록 표 2. 계속

| 구분 | 싱가포르-인도 CECA | 인도-UAE CEPA |
|----------------|--------------|-------------|
| 협력 | x | ✓ |
| 디지털 정부 | x | ✓ |
| 디지털 제품 관련 협력 | x | ✓ |
| 중이 없는 무역 | x | ✓ |
| 국내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 x | ✓ |
| 분쟁 조정 제외 | x | ✓ |

자료: Mitchell and Mishra(2023), pp. 26-27.

부록 표 3. 호주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챗터

| 구분 | CPTPP | ChFTA | HK-AFTA | IAEPA | KAFTA | PAFTA | JAFTA | 영국-호주 FTA | RCEP |
|------------------------------------|-------|-------|---------|-------|-------|-------|-------|-----------|------|
| 목표 및 목적 - 경제 성장, 무역 기회 증진 등 | ✓ | ✓ | ✓ | ✓ | ✓ | ✓ | ✓ | ✗ | ✓ |
| 전자상거래에 관한 섹션/징에서 규제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 ✗ | ✗ | ✗ | ✗ | ✗ | ✗ | ✗ | ✓ | ✓ |
| 전자상거래 장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제외 사항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제품의 차별 금지 | ✓ | ✗ | ✗ | ✗ | ✗ | ✓ | ✓ | ✓ | ✓ |
|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보안 별도 조항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현지화 | ✓ | ✗ | ✓ | ✓ | ✗ | ✓ | ✗ | ✓ | ✓ |
| 국경 간 정보 전송 | ✓ | ✗ | ✓ | ✓ | ✗ | ✓ | ✗ | ✗ | ✓ |
| 전자상거래 국내 규제 | ✗ | ✗ | ✗ | ✗ | ✓ | ✗ | ✓ | ✓ | ✗ |
| 개방형 인터넷 액세스 | ✓ | ✗ | ✗ | ✗ | ✗ | ✓ | ✗ | ✓ | ✓ |
| 전자 서명 및 인증 | ✓ | ✓ | ✓ | ✓ | ✓ | ✓ | ✓ | ✓ | ✓ |
| 스캠 | ✓ | ✗ | ✓ | ✓ | ✓ | ✓ | ✗ | ✓ | ✗ |
| 소스코드 공개 의무 | ✓ | ✗ | ✓ | ✓ | ✗ | ✓ | ✗ | ✗ | ✓ |

부록 표 3. 계속

| 구분 | CPTPP | ChFTA | HK-AFTA | IAEPA | KAFTA | PAFTA | JAFTA | 영국-호주 FTA | RCEP |
|----------------|-------|-------|---------|-------|-------|-------|-------|-----------|------|
| 컴퓨터 서비스의 정의 | x | x | x | x | x | x | x | ✓ | ✓ |
| 전자상거래 관련 대화/협력 | ✓ | ✓ | ✓ | ✓ | x | ✓ | ✓ | ✓ | ✓ |
| 종이 없는 무역 | ✓ | ✓ | ✓ | ✓ | ✓ | ✓ | ✓ | x | x |
| 국내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 ✓ | ✓ | ✓ | ✓ | ✓ | x | x | ✓ | x |
| 물류, 특송 배송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전자 인보이스 발행 | x | x | x | x | x | x | x | ✓ | x |
| 전자 결제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디지털 ID | x | x | x | x | x | x | x | ✓ | x |
| 인공지능 | x | x | x | x | x | x | x | ✓ | x |
| 공공 데이터 개방 | x | x | x | x | x | x | x | ✓ | x |
| 데이터 혁신 | x | x | x | x | x | x | x | ✓ | x |
| 별도 챗봇로 구분 | ✓ | ✓ | ✓ | ✓ | ✓ | ✓ | ✓ | x | ✓ |

자료: Mitchell and Mishra(2023), pp. 25-26.

Executive Summary

Analysis of India's Data Govern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Jeong Gon Kim, Hyojin Lee, and Bandi Kang

India is a digital market with huge potential and influence. India is actively building a data governance system; Of all the digital policies currently in place or being established in India, about 25% (53 policies) are related to data governance. Against this background, we study the data governance policies and regulations in India, as well as the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major countries, and cases of companies.

Chapter 2 analyses India's top-level data policy framework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the data regulations that govern its implementation. India is considering a long-term, comprehensive data governance framework such as the 'National Data Governance Policy (draft)'. It is also building a government-led data accumulation and utilisation system, India Stack.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led data ecosystem is a key feature of India'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and has the potential to spread as an alternative to other latecomers to digital transformation.

India's data regulations are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while seeking its own path.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is business-friendly and avoids excessive restrictions. It is characterised by the introduction of a negative approach that allows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principle. However, sector-specific data localisation regulations are applied, and there are some parts that need to be specified in

application. The Non-Personal Data Governance Framework (draft) announced in 2020 expresse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create data platforms and data marketplaces, but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restrictions. The Digital India Act (draft, 2023) i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hat responds to the rapid growth of new technologies and large technology companies represented by platforms. Through this,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large technology companies in India will be newly established. It is likely that data regulations will be introduced for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s transparency standards for data processing based on types of platforms.

In Chapter 3, we analysed the aspects of data governance in India expressed through digital trade policy. India has maintained a protectionist stance on data openness in WTO negotiations and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th Australia and the EU.

The US government has been raising the issue of data barriers with India, but given India's strategic importance, it is unlikely that the US government will exert bilateral trade pressure. However, it is likely that US companies will continue to raise issues and exert influence on India's data policy.

The EU and India are placing more emphasis on discussions about data governance in general rather than regula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bilateral discussions will focus on areas where the interests of the two sid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oincide. It is noteworthy that the EU is responding to India's initiative to spread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DPI).

It is unlikely that Australia will be able to implement the liberalis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the restriction of data localisation measures in the CECA negotiations with India. However, Australia has been able to induce India to open up in the AI-ECTA service trade and financial services negotiations. Australia seeks to expand digital trade and data transfer with India and pursue institutional compatibility under the framework of strategic cooperation such as the QUAD.

Despite India's high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t is likely to remain wary of China in the digital sector. In particular, Chinese companies' investments in areas directly related to data security are expected to be treated with great sensitivity.

India is presenting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 as a key agenda at major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G20 and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sation Assembly (WTSA-24), as well as multilateral forums such as QUAD, and is stepping up its efforts to make its DPI model an international standard. This is believed to be an attempt to expand India'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building digital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global south.

Chapter 4 synthesises the above research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data norms in India.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provides separate regulatory grounds for large-scale data processing companies and does not clearly state the legal basis for data processing, which may cause uncertainty in corporate activiti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list of countries that

the Indian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as data transfer restriction countries. The Digital India Act (draft) currently under discussion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by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of data processing, with platform companies as the main target.

Second, we can consider indirect measures to make the activities of data-related companies freer through negotiations with India. Like AI-ECTA,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level of openness of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engineering and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provis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software provided by financial data processing. If the data related articles are included, it is possible to include a temporary clause as an intermediate step in the liberalisation of data transfer and data localisation, and to review i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a's data system. Meanwhile,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like-minded countries. Korea is already participating in the Korea-US-India iCET,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QUAD countries' agenda for cybersecurity and DPI cooperation.

Third, digital cooperation with India requires the building of trust capital, and key area is DPI. India's DPI is a government-led model with no precedent, and is like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responding to the DPI cooperation agenda in the G20, ITU, UNDP, and QUAD. Korea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interoperability, and inclusiveness of DPI in developing countries. It would also be

possible for Korea to cooperate with India in projects such as capacity building and expert excha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Fourth, Korea should seek cooperation in the digitalisation of the public sector in India using ODA. It is believed that cooperation can be found in tasks such as standardising data management, data security, building data platforms, and expanding public data accessibility, etc. In particular, the digitalisation of government services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India is a field with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tinuous bilateral contact platforms so that Korean and Indian policy makers can share the changing aspects of data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set current issues such as data and DPI as an ongoing agenda in channels such as the ministerial-leve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and the established Korea-In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olicy Council. Going further, the two countries could consider forming partnerships between relevant ministries and operating regular forums to exchange issues related to data governance.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companies entering India should be actively communicated through the Korea-India government-to-government dialogue channels, such as the Korea-India Fast Track Mechanism, Invest India, etc. Cooperation with a third country can also be promoted.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which already has its own influence in India, cooperation with Japan may be more effective.

<책임>

김정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
(現, E-mail: j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공저, 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공저, 2023) 외

<공동>

이효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yojin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공저, 2021)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공저, 2022) 외

강반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 및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d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싱가포르의 미국과의 FTA 체결요인분석: 동아시아 국가의 신중상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2014)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공저, 2020) 외

KIEP 중장기통상전략 발간자료 목록

| | | |
|---------|-------|--|
| ■ 2024년 | 24-01 |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 김남석 · 이재호 · 신민금 · 김계국 |
| | 24-02 |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 김영귀 · 최원석 · 조성훈 · 이현진 · 정민철 |
| | 24-03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 김정곤 · 이효진 · 강반디 |
| | 24-04 |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연구 / 광도원 · 편주현 · 어윤중 |
| ■ 2023년 | 23-01 |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경훈 · 김정곤 · 한형민 · 노운재 |
| | 23-02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 김남석 · 라미령 · 최인아 · 신민이 · 장한별 |
| | 23-03 |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 홍성우 · 김진오 · 박미숙 · 이승호 |
| | 23-04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 한선이 · 강문수 · 김예진 · 박규태 |
| | 23-05 |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 정민현 · 강부균 · 민지영 · 정동연 · 김보라 |
| ■ 2022년 | 22-01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 강구상 · 김혁중 · 김종혁 · 권혁주 · 박은빈 · 윤여준 |
| | 22-02 |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 이승신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 | 22-03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 김규판 · 이형근 · 이정은 |
| | 22-0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 장영욱 · 조동희 · 이철원 · 박지현 · 오태현 · 이현진 · 김초롱 |
| | 22-05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 광성일 · 조승진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연 · 김소은 |
| | 22-06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 정민현 · 정동연 · 민지영 · 강부균 |

- 21-0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 이한영 · 권병규 · 차성민
 - 21-02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광도원 · 이동은 · 편주현
 - 21-03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 김준동 · 연원호 · 이규엽 · 문진영 · 장영욱 · 정지원 · 강구상 · 광성일 · 한형민 · 최원석 · 김정곤 · 정민현 · 강문수 · 이주관 · 권혁주 · 김은미 · 이예림 · 윤형준 · 윤여준
 - 21-04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 21-05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 / 이천기 · 강민지 · 김민주
- 20-01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 예상준 · 엄준현
 - 20-02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 / 이시욱 · 최용석
 - 20-03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 구경현 · 조문희 · 김혁황 · 박혜리 · 이준호
- 19-01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 서진교 · 박지현 · 김민성 · 시타르타 미트라
 - 19-02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 이재민
 - 19-03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 이천기 · 엄준현 · 강민지
 - 19-04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 유재원 · 강문성 · 강인수 · 박성훈 · 송백훈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열
 - 19-05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 장용준 · 김민정 · 최보영 · 현혜정
- 18-01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상겸 · 박순찬 · 박인원 · 오수현
 - 18-02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 이홍식 · 강문성 · 김한성 · 송백훈 · 이창수
 - 18-0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 이한영 · 차성민
- 17-01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 최창호 · 김범환
 - 17-02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 홍순직 · 이석기 · 조봉현 · 이윤식 · 정일영

■ 2016년

- 17-03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 이상제 · 박해식
- 17-04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 박성훈 · 한홍열 · 송유철 · 강문성 · 송백훈
- 17-05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이규엽 · 조문희 · 강준구 · 박혜리 · 엄준현
- 16-01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 임수호 · 최장호 · 민준규 · 이상민 · 최유정
- 16-02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 금융·재정 분야 / 김영찬 · 김범환 · 홍석기 · 박현석
- 16-03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 김진수 · 황규성 · Christina Hiebl
- 16-04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 박철수 · 조봉현 · 정일영
- 16-05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 /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 16-06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 16-07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 / 세르게이 루코닌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 | 8만원 | | 4만원 |
| A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8만원 | | 4만원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KIET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계간지 |
|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alysis of India's Data Govern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Jeong Gon Kim, Hyojin Lee, and Bandi Kang

인도가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잠재력과 영향력을 실현해가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 간 통상협력, 그리고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했다. 결론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인도와의 통상협력 방안,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 협력, 정부 간 논의 채널 확대 및 기업 애로사항의 효율적 협의방안 등을 논의했다.



ISBN 978-89-322-7128-6
978-89-322-7092-0 (세트)

정가 7,000원